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7-25호

2017년 6월 1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3124호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125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126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127호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0호	순천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일반 수도사업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1호	장흥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 수도사업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2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정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4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6호	녹동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시행계획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04호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0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1호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2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5호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6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21호	전라남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7-526호	녹동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공고

◆ 시군 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7-86호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7-95호	목포 도시관리계획(학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목포시 공고 제2017-62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70) 실시계획 공고
여수시 고시 제2017-129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시 공고 제2017-1093호	여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순천시 고시 제2017-7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천시 공고 제2017-87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공고 제2017-873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전 열람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17-585호	나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17-596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광양시 고시 제2017-103호	백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17-105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진군 공고 제2017-311호	2025년 강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재공람 공고
무안군 고시 제2017-57호	무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광군 고시 제2017-59호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 지정 고시
영광군 공고 제2017-331호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주민 열람 공고
완도군 공고 제2017-278호	2025년 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 유관기관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7-53호	공인 등록 공고
---------------------	----------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규칙 제3124호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를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안전 분과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규칙 제3125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및 제95조제1항”을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으로, “정하므로써”를 “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중 “과장·담당관”을 “연구부장,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과장, 담당관”을 “연구부장,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요 또는”을 “중요하거나”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을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으로, “중요하여 전결권자”를 “전결권자”로, “하도록 할”을 “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협의 또는 협조)”를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이 할 때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다”를 “상이할 때에는 원장의 결정에 의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전결사항의 보고등)”을 “(전결사항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결하는 사항중 중요하고”를 “전결사항 중 중요하거나”로, “보고를 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결재절차등)”을 “(결재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를 “때”로, “포함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재함에 있어서”를 “결재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를 “때”로, “제외하고는”을 “제외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토, 결재함에 있어 생략사유를 확인토록”을 “검토·결재하면서 생략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규정 중 감염병조사과와 대기폐수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가 신설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생물과, 대기보전과, 폐기물분석과의 전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단위사무별 전결권 구분(제3조, 제4조)

[공통]

부서별	단위사무명	세 부 업 무	결재(전결)권자				원장
			실무자	팀장	과장	부장	
계	18	48	0	14	10	6	18
공통	1.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외출, 유연근무제	가. 연구관	기안				○
		나. 6급	기안				○
		다. 연구사	기안			○	
		라. 7급 이하	기안	○			
	2. 출장	가. 해외 및 타 시도	기안				○
		나. 도내					
		1) 연구관	기안				○
		2) 6급	기안				○
		3) 연구사	기안			○	
		4) 7급 이하	기안	○			
	3. 초과근무명령	가. 6급 이하	기안	○			
		나. 연구사	기안			○	
	4. 당직근무	가. 당직근무 명령	기안				○
		나. 당직근무 변경	기안	○			
	5. 일일명령	가. 관리팀	기안	○			
		나. 연구부	기안		○		
	6. 민원서류 처리(관리팀)	가. 다수인 및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기안			○
		나.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한 중간 처리상황 통보, 기각, 완결 통지	기안	○			
		다. 일반적인 경미한 민원	기안	○			

부서별	단위사무명	세 부 업 무	결재(전결)권자				원장
			실무자	팀장	과장	부장	
	7. 민원서류 처리(연구부)	가. 다수인 및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기안		○
		나.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 통지	기안		○		
		다. 일반적인 경미한 민원	기안		○		
	8. 각종 행사(관리팀)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경미사항	기안	○			
	9. 각종 행사(연구부)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경미사항	기안		○		
	10. 사무분장	가. 부장, 과장			기안		○
		나. 관리팀장		기안			○
		다. 연구부(연구사 등)	기안			○	
		라. 관리팀(7급 이하)	기안	○			
	11. 시험성적서 처리	가. 시험성적서 발급	기안		○		
		나. 시험성적서 외 중요문서 (정도관리, 진정 등)	기안			○	
	12. 의회업무(요구자료, 행정사무감 사 등)		기안				○
	13. 연구결과 대외발표	가. 전문 학술지 논문 투고	기안				○
		나. 각종 회의 발표	기안				○
	14. 예산집행품의(관리팀)	가. 예정금액 200만원 초과	기안				○
		나.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	기안	○			
	15. 예산집행품의(연구부)	가. 예정금액 500만원 초과	기안				○
		나. 예정금액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 하	기안			○	
		다.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	기안		○		

부서별	단위사무명	세 부 업 무	결재(전결)권자				원장
			실무자	팀장	과장	부장	
	16. 주간업무보고		기안				○
	17. 기타(관리팀)						
		가. 주요시책 및 업무 관련 자료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의 실태조사 및 처리	기안	○			
		다. 계획 및 시행이 결정된 자료의 수집	기안	○			
		라. 수리에 그치는 경미한 문서의 처리	기안	○			
		마. 각종대장, 장부정리, 기록확인 및 보조서류 처리	기안	○			
	18. 기타(연구부)						
		가. 주요시책 및 업무 관련 자료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의 실태조사 및 처리	기안		○		
		다. 계획 및 시행이 결정된 자료의 수집	기안		○		
		라. 수리에 그치는 경미한 문서의 처리	기안		○		
		마. 각종대장, 장부정리, 기록확인 및 보조서류 처리	기안		○		

[관리팀]

실과별	단위사무명	세 부 업 무	결재(전결)권자			원 장
			실무자	팀 장	부 장	
계	19	90	0	27	0	30
관리팀	1. 소관업무의 기획	가. 중요시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변경		기안		○
		나. 지시사항 처리	기안	○		
	2. 보안업무	가. 보안업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기안			○
		다.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기안			○
		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요구	기안	○		
		마. 보안진단에 관한 사항	기안	○		
	3. 복무	가. 직원 복무관리	기안			○
		나. 직무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4. 인사	가. 직렬 직급 조정에 관한 건의	기안			○
		나. 비정규직원 임용	기안			○
		다. 원내 직원배치	기안			○
		라. 성과관리제	기안			○
	5. 상벌	가. 표창수여 및 감사장 수여	기안			○
		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기안			○
	6. 직장 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7. 공인관리	가. 공인제작 결정 요구	기안			○
		나. 공인폐기 신고	기안			○
		다. 공인간수에 관한 사항	기안	○		
	8.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기안			○
	9. 문서관리	가. 보존문서 관리	기안	○		
		나. 문서이관 및 폐기	기안	○		
		다. 전자문서 외 일반문서 검토 및 관리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세 부 업 무	결재(전결)권자			원 장
			실무자	팀 장	부 장	
	10. 민방위	가. 비상시 자체 방호계획 수립	기안			○
		나. 비상소집 및 훈련	기안			○
		다. 자체방호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민방위대원 관리	기안	○		
	11. 직원후생	가. 직원 후생복지 관한 중요사항		기안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12. 검사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3. 민원업무	가. 민원실 운영사항 일일결산	기안	○		
		나. 민원 사무 처리부	기안	○		
		다. 민원 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예산편성 및 운영	가. 예산편성 요구	기안			○
		나. 예산운영				
		1)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제출	기안	○		
		2) 예산운영 상황보고	기안	○		
	15. 공사 및 물품관리	가. 관리전환 등 중요사항	기안			○
		나. 공사 및 물품구매 실적 증명	기안	○		
		다. 물가조사 및 시가 감정의뢰	기안	○		
		라. 소모품 수급 등 경미사항	기안	○		
	16. 회계일반	가. 변상명령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일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회계직 공무원 이동보고 처리	기안	○		
		라.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제세, 기여금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세외수입 징수 결정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세 부 업 무	결재(전결)권자			원 장
			실무자	팀 장	부 장	
	17. 공유재산 관리	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공유재산 관리 책임자 지정	기안			○
		다. 공유재산 관리 전환 신청	기안			○
		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기안			○
		마.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안			○
		바.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경미한 사항	기안	○		
	18. 차량관리 및 운영		기안	○		
	19. 청사유지관리					
		가. 청사 신축공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사 설계의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인부사역에 관한 사항	기안	○		

[연구부]

실과별	단위사무명	결재(전결)권자			원 장
		실무자	과 장	부 장	
계	123	0	76	21	26
미생물과	1. 부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안		○	
	2. 도의회및도정시책주요업무	기안			○
	3. 제1군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기안	○		
	4.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 및 역학조사	기안		○	
	5. 장관계법정감염병병원체확인진단	기안	○		
	6. 면역학적 결핵 확인진단	기안	○		
	7. 말라리아,브루셀라증,수두,기생충검사	기안	○		
	8.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 및 확인진단	기안	○		
	9. 국가전염병조기정보망(PulseNet) 운영	기안	○		
	10. 일본뇌염유행예측조사	기안	○		
	11. 급성설사감시사업	기안	○		
	12. 병원성 비브리오 오염도 조사 및 확인진단	기안	○		
	13. 항생제내성균 분포조사	기안	○		
	14. 시험·검사 정도관리	기안		○	
	15. 연구원 검사 실적보고 등 통계관리	기안			○
	16.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	기안		○	
	17. 기타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연구		기안		○
감염병조사과	1. 도의회및도정시책주요업무	기안			○
	2.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운영	기안	○		
	3.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및 위험병원체 확인진단	기안	○		
	4.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병원체 확인진단	기안		○	
	5.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기안	○		
	6. 메르스 확진검사	기안		○	
	7. 환경수계 레지오넬라 오염도	기안	○		
	8.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	기안	○		
	9. 신종 및 고병원성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진단	기안	○		
	10. 모기매개질환 확인진단	기안	○		
	11.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매개체 감시 및 확인진단	기안	○		
	12.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조사	기안			○
	13.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결재(전결)권자			원 장
		실무자	과 장	부 장	
감염병조사과	14. 시험·검사 정도관리	기안		○	
	15. 보건소 에이즈·매독 정도관리	기안		○	
	16. 기타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연구		기안		○
식품분석과	1. 도 의회 및 도정시책 주요업무		기안		○
	2.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검사	기안	○		
	3. 규격외 일반기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기안	○		
	4. 특수용도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	기안	○		
	5. 건강기능식품 개별 기준 및 규격 검사	기안	○		
	6. 식품첨가물 검사	기안	○		
	7. 유전자 재조합식품 검사	기안	○		
	8. 기구 및 용기·포장재 규격 검사	기안	○		
	9. 위생용품 검사	기안	○		
	10.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검사	기안	○		
	11. 농·수산물 식중독균 검사	기안	○		
	12. 수산물 중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	기안	○		
	13. 수입식품 등 기준 및 규격 검사	기안	○		
	14. 식품관련 신종 유해물질 검사	기안	○		
	15.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결과보고)	기안		○	
	16.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사업(결과보고)	기안		○	
	17.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실태 조사(결과보고)	기안		○	
	18. 시험·검사 정도관리	기안		○	
	19.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기안		○
약품화학과	1. 도 의회 및 도정시책 주요업무		기안		○
	2. 의약품·의약외품 등 검사	기안	○		
	3. 방역약품 검사	기안	○		
	4. 화장품 검사	기안	○		
	5. 한약재 검사	기안	○		
	6. 김 양식어장 사용 활성처리제 검사	기안	○		
	7. 유통농산물잔류농약 검사	기안	○		
	8. 시험·검사 정도관리	기안		○	
	9.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결재(전결)권자			원 장
		실무자	과 장	부 장	
환경조사과	1. 도 의회 및 도정시책 주요업무		기안		○
	2.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기안	○		
	3.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	기안	○		
	4.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기안	○		
	5. 오존 경보제 운영	기안	○		
	6.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기안	○		
	7. 물환경측정망 운영	기안	○		
	8. 하천수 수질검사	기안	○		
	9. 호소수 수질검사	기안	○		
	10. 환경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	기안			○
	11.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기술지도·점검	기안		○	
	1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요원에 대한 훈련	기안		○	
	13. 대기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안			○
	14.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안			○
	15. 시험·검사 정도관리	기안		○	
	16.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기안		○
수질분석과	1. 도 의회 및 도정시책 주요업무		기안		○
	2. 상수도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질검사	기안	○		
	3.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기안	○		
	4.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기안	○		
	5. 샘물 및 먹는샘물 수질검사	기안	○		
	6. 지하수 수질검사	기안	○		
	7.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기안	○		
	8. 목욕장수, 수영장수, 온천목욕장수 수질검사	기안	○		
	9. 학교먹는물 수질검사	기안	○		
	10. 정수장 수질 기술지도 및 교육	기안		○	
	11.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기안	○		
	12.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	기안	○		
	13. 매립장 검사정 수질검사	기안	○		
	14.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기안	○		
	15.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기안	○		
	16. 식중독 관련 수질검사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결재(전결)권자			원 장
		실무자	과 장	부 장	
수질분석과	17. 시험 · 검사 정도관리	기안		○	
	18.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기안		○
대기폐수과	1. 도 의회 및 도정시책 주요업무		기안		○
	2. 공장 및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검사	기안	○		
	3. 소음·진동검사	기안	○		
	4.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기안	○		
	5. 사업장 비산먼지 검사	기안	○		
	6. 악취 측정 분석	기안	○		
	7.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	기안		○	
	8.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기술지도	기안		○	
	9.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도 검사	기안	○		
	10.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기안	○		
	11. 개인하수 방류수 검사	기안	○		
	12.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기안	○		
	13. 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기안	○		
	14. 축산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기안	○		
	15.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기안	○		
	16.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검사	기안	○		
	17. 중수도 수질검사	기안	○		
	18. 생태독성 검사	기안	○		
	19.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기안	○		
	20. 토양오염 실태조사	기안		○	
	21. 토양 등의 오염물질 검사	기안	○		
	22. 어린이 활동공간의 모래 등 토양 검사	기안	○		
	23.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	기안		○	
	24. 시험 · 검사 정도관리	기안		○	
	25.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기안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규칙 제3126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7조(학칙 등)」 ” 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 ” 로,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으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피교육자(이하 “교육생” 이라 한다)선발” 을 “피교육자(이하 “교육생” 이라 한다) 선발”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교육생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생수칙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중 “5분전” 을 “5분 전” 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및 법정휴일” 을 “및 법정 공휴일”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간중” 을 “교육기간 중” 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아니 하였” 을 “아니하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연 하였” 을 “지연하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위반 하였” 을 “위반하였”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문교육과정등 필요한 때에는” 을 “전문교육과정 등 필요한 경우” 로 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 을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평가관리규정」 ” 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우수한자.” 를 “우수한 사람,”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평균60점” 을 “평균 60점” 으로, “자에게” 를 “사람에게”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교육중 1주미만” 을 “교육 중 1주 미만” 으로, “통보로서 가름” 을 “통보로써 가름”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학적부관리)” 를 “(학적부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 을 “작성하여”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교육생자치)” 를 “(교육생 자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관하여는” 을 “필요한 사항은” 으로 한다.
제20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규칙 제3127호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를 “제8조”로, “공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은 자체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6만원을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중 “운전원,”을 “운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기타 당직근무 편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업무 또는 정책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완장 또는 표찰”을 “표찰”로 한다.

제12조 중 “행정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을 각각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각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본부·사업소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당해 사무실에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상시 비치하고,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기록하게 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2개 또는 3개 실·과를 임의선정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담당급” 을 “팀장급” 으로 한다.

제24조 중 “도지사와 행정과장” 을 “도지사와 총무과장” 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행정과” 를 “총무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 을 각각 “총무” 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0호

순천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일반 수도사업인가 고시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칭 : 순천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순천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낙안 창녕지구 일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 개 요
 - 시설내용 : 송배수관로 18.3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상사면 초곡리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상사면 초곡리
 - 급수인구 : 410명
 - 1인 1일 급수량(일평균) : 332 ℓ /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05. ~ 2018. 12.
 - 급수개시 예정일 : 2018. 12.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반·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다음
 - ※ 관계 도서 공람장소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상수도과(061-749-6557)

사용할 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순천시	낙안	교촌	2	-		전	536.0	3.0		전라남도
〃	〃	〃	산4	-	17	임	1,456.0	4.4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산250	-	10	도	1,760.0	7.2		전라남도
〃	〃	〃	산250	-	11	도	841.0	5.8		전라남도
〃	〃	〃	산249	-	1	도	1,818.0	10.0		전라남도
〃	〃	〃	산249	-	2	도	1,888.0	2.6		전라남도
〃	〃	〃	산248	-	1	도	1,561.0	9.2		전라남도
〃	〃	〃	산246	-	4	도	776.0	9.0		전라남도
〃	〃	〃	988	-		도	5,273.0	24.4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956	-	3	도	447.0	3.6		전라남도
〃	〃	〃	산245	-	4	도	682.0	6.6		전라남도
〃	〃	〃	산243	-	1	임	2,541.0	22.8		전라남도
〃	〃	〃	산242	-	5	도	1,132.0	8.4		전라남도
〃	〃	〃	산253	-	4	도	3,085.0	25.8		전라남도
〃	〃	〃	989	-		구	8,783.0	2.2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940	-	2	답	80.0	1.2		전라남도
〃	〃	〃	923	-	22	답	208.0	4.0		전라남도
〃	〃	〃	923	-	6	도	331.0	1.8		전라남도
〃	〃	〃	923	-	3	도	621.0	5.8		전라남도
〃	〃	〃	923	-	17	도	458.0	2.4		전라남도
〃	〃	〃	923	-	16	도	853.0	14.2		전라남도
〃	〃	〃	923	-	15	도	1,326.0	13.2		전라남도
〃	〃	〃	927	-	7	대	1,400.0	12.0		전라남도
〃	〃	〃	927	-	9	도	132.0	0.4		전라남도
〃	〃	〃	928	-	1	도	371.0	1.2		전라남도
〃	〃	〃	728	-	1	도	798.0	6.4		전라남도
〃	〃	〃	729	-	3	도	1,931.0	16.8		전라남도
〃	〃	〃	732	-	1	도	279.0	1.2		전라남도
〃	〃	〃	731	-	1	도	374.0	2.4		전라남도
〃	〃	〃	988	-		도	5,273.0	7.8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740	-	2	도	400.0	3.4		전라남도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순천시	낙안	창녕	739	-	2	도	291.0	28		전라남도
〃	〃	〃	739	-	3	도	742.0	6.0		전라남도
〃	〃	〃	989	-		구	8,783.0	3.6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737	-		도	89.0	0.8		전라남도
〃	〃	〃	791	-	5	도	1,696.0	11.8		전라남도
〃	〃	〃	791	-	4	도	481.0	6.4		전라남도
〃	〃	〃	790	-		도	53.0	2.4		전라남도
〃	〃	〃	816	-		도	155.0	2.4		전라남도
〃	〃	〃	816	-	2	답	26.0	0.8		전라남도
〃	〃	〃	987	-		도	1,412.0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817	-	3	도	192.0	4.4		전라남도
〃	〃	〃	817	-	4	도	100.0	0.6		전라남도
〃	〃	〃	818	-	18	도	156.0	5.2		전라남도
〃	〃	〃	818	-	19	도	301.0	2.4		전라남도
〃	〃	〃	818	-	2	도	99.0	2.8		전라남도
〃	〃	〃	984	-		구	3,137.0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601	-	2	도	383.0	4.6		전라남도
〃	〃	〃	601	-	3	도	333.0	1.4		전라남도
〃	〃	〃	978	-		도	965.0	1.0	국유지	국토교통부
순천시	상사	쌍지	602	-		도	800.0	0.4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602	-	3	도	178.0	2.0		전라남도
〃	〃	〃	602	-	4	도	279.0	7.0		전라남도
〃	〃	〃	산124	-	1	도	126.0	5.0		전라남도
〃	〃	〃	599	-		도	221.0	1.8		전라남도
〃	〃	〃	산124	-	4	도	407.0	5.0		전라남도
〃	〃	〃	598	-	1	도	1,536.0	4.8		전라남도
〃	〃	〃	산124	-	2	도	1,388.0	16.2		전라남도
〃	〃	〃	산123	-	1	도	1,014.0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산125	-	1	도	496.0	8.2		전라남도
〃	〃	〃	산126	-	3	도	215.0	1.2		전라남도
〃	〃	〃	974	-		도	152.0	1.2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570	-	2	도	76.0	0.4		전라남도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순천시	낙안	창녕	570	-	3	도	235.0	3.4		전라남도
〃	〃	〃	산128	-	1	도	313.0	3.2		전라남도
〃	〃	〃	571	-	4	도	374.0	4.4		전라남도
〃	〃	〃	968	-	2	도	334.0	0.8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578	-	3	도	384.0	4.0		전라남도
〃	〃	〃	578	-	2	도	139.0	1.8		전라남도
〃	〃	〃	975	-		도	159.0	1.8	국유지	건설부
〃	〃	〃	577	-	2	도	63.0	1.6		전라남도
〃	〃	〃	577	-	3	도	39.0	0.6		전라남도
〃	〃	〃	576	-	3	도	39.0	1.6		전라남도
〃	〃	〃	576	-	4	도	119.0	2.8		전라남도
〃	〃	〃	581	-	4	도		5.2		전라남도
〃	〃	〃	581	-	3	도	220.0	5.0		전라남도
〃	〃	〃	산130	-	1	도	274.0	6.6		전라남도
〃	〃	〃	산131	-	1	도	929.0	14.2		전라남도
〃	〃	〃	553	-	1	도	73.0	1.2		전라남도
〃	〃	〃	968	-		도	2,576.0	0.8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283	-	3	도	406.0	3.8		전라남도
〃	〃	〃	283	-	2	도	30.0	0.6		전라남도
〃	〃	〃	963	-		도	2,073.0	1.4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산132	-	1	도	274.0	1.8		전라남도
〃	〃	〃	산144	-	1	도	3,152.0	22.2		전라남도
〃	〃	〃	288	-	1	도	159.0	3.0		전라남도
〃	〃	〃	산145	-	4	도	646.0	4.4		전라남도
〃	〃	〃	289	-	9	도	761.0	9.0		전라남도
〃	〃	〃	963	-		도		5.4		전라남도
〃	〃	〃	291	-	20	도	300.0	4.0		전라남도
〃	〃	〃	291	-	19	도	972.0	6.4		전라남도
〃	〃	〃	291	-	18	도	946.0	11.4		전라남도
〃	〃	〃	314	-	4	도	806.0	4.4		전라남도
〃	〃	〃	291	-	16	도	377.0	5.2		전라남도
〃	〃	〃	291	-	17	도	412.0	1.8		전라남도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순천시	낙안	창녕	291	-	14	도	362.0	2.8		전라남도
〃	〃	〃	964	-		구	13,927.0	1.8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312	-	5	도	1,065.0	10.8		전라남도
〃	〃	〃	311	-	1	도	383.0	5.4		전라남도
〃	〃	〃	312	-	3	도	767.0	3.2		전라남도
〃	〃	〃	346	-	2	도	50.0	1.2		전라남도
〃	〃	〃	962	-		도	3,058.0	22.4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산152	-	1	도	626.0	5.4		전라남도
〃	〃	〃	961	-		구	8,820.0	3.2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46	-	2	도	33.0	1.0		전라남도
〃	〃	〃	43	-	3	도	714.0	13.8		전라남도
〃	〃	〃	41	-	2	도	73.0	0.8		승주군
〃	〃	〃	41	-	3	도	30.0	0.2		전라남도
〃	〃	〃	960	-		도	2,215.0	13.4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산26	-	4	도	4,228.0	8.8		전라남도
〃	〃	〃	30	-	2	도	1,232.0	0.6		순천시
〃	〃	〃	30	-	3	도	156.0	1.2		순천시
〃	〃	〃	31	-	3	도	917.0	14.4		순천시
〃	〃	〃	8	-	4	도	165.0	2.2		순천시
〃	〃	〃	8	-	6	도	287.0	2.4		전라남도
〃	〃	〃	959	-		도	1,504.0	7.2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산39	-	1	도	711.0	12.4		전라남도
〃	〃	〃	산38	-	1	도	3,989.0	35.8		전라남도
〃	〃	〃	1	-		도	112.0	1.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산135	-	2	도	2,524.0	21.6		전라남도
〃	〃	〃	459	-	2	도	762.0	2.0		전라남도
〃	〃	〃	산135	-	8	도	6,877.0	26.8		전라남도
〃	〃	〃	산135	-	7	도	1,283.0	19.6		전라남도
〃	〃	〃	산135	-	5	도	1,309.0	10.8		전라남도
〃	〃	〃	산135	-	1	도	706.0	1.4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산137	-	2	도	190.0	2.0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410	-		도	817.0	15.2		전라남도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순천시	상사	쌍지	산137	-	4	도	328.0	3.8		전라남도
〃	〃	〃	산140	-	2	도	477.0	2.4		전라남도
〃	〃	〃	산140	-	1	도	404.0	4.8	국유지	국토교통부
〃	〃	〃	산138	-	1	도	229.0	2.2		전라남도
〃	〃	〃	408	-	1	도	843.0	13.0		전라남도
〃	〃	〃	407	-	5	도	421.0	5.6		전라남도
〃	〃	〃	405	-	5	도		5.4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11	-		도	207.0	1.6	국유지	기획재정부
〃	〃	〃	401	-		도	268.0	5.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400	-	1	도	224.0	0.8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10	-		도	75.0	2.4		순천시
순천시	상사	쌍지	399	-	1	도	668.0	7.6		전라남도
〃	〃	〃	산107	-	1	도	3,255.0	19.8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09	-		도	30.0	10.8		최한성
순천시	상사	쌍지	129	-	2	도	82.0	1.0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131	-	1	도	175.0	2.8		전라남도
〃	〃	〃	379	-		도	446.0	0.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377	-	8	도	101.0	0.4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378	-		도	231.0	0.9		전라남도
〃	〃	〃	산144	-	1	도	3,152.0	4.3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900	-		도	744.0	4.4		전라남도
〃	〃	〃	377	-	7	도	822.0	2.5		전라남도
〃	〃	〃	377	-	5	도	1,565.0	14.8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154	-		도	357.0	2.1		전라남도
〃	〃	〃	155	-		도	251.0	2.9		전라남도
〃	〃	〃	157	-		도	631.0	4.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160	-	1	도	521.0	3.9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00	-		도		0.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산152	-	3	도	613.0	3.9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00	-		도		3.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산153	-	6	도	938.0	3.7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00	-		도		2.1		전라남도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순천시	낙안	창녕	165	-		도	149.0	1.7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166	-	7	도	676.0	4.2		전라남도
〃	〃	〃	165	-	2	도	56.0	0.3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00	-		도		0.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166	-	6	도	1,003.0	3.8		전라남도
〃	〃	〃	222	-	12	도	663.0	4.1		전라남도
〃	〃	〃	222	-	13	도	1,525.0	7.4		전라남도
〃	〃	〃	222	-	8	도	7.0	0.1		전라남도
〃	〃	〃	222	-	5	도	36.0	0.1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	창녕	900	-		도		0.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231	-	5	도	36.0	0.2		전라남도
〃	〃	〃	231	-	9	도	747.0	3.1		전라남도
〃	〃	〃	231	-	7	도	111.0	0.3		전라남도
〃	〃	〃	233	-	1	도	218.0	0.8		전라남도
〃	〃	〃	248	-	1	도	1,462.0	0.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	쌍지	산160	-	4	도	833.0	3.3		전라남도
〃	〃	〃	253	-	7	도	115.0	0.8		순천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1호

장흥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 수도사업인가 고시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칭 : 장흥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장흥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장평면, 부산면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 시설내용 : 배수관로 11.67km, 급수관로 11.02km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부산면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부산면 일원
 - 급수인구 : 417명
 - 1인 1일 급수량(일평균) : 장평, 부산 270 ℓ /인·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9. 04.
 - 급수개시 예정일 : 2019. 05.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반·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다음
 - ※ 관계 도서 공람장소 : 장흥군 수도사업소(061-860-0523)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주 소	성명	
장흥	장평	임	104-1	도	321	4.6	장흥군		
장흥	장평	임	104-2	도	182	2.9	장흥군		
장흥	장평	광평	267-9	도	200	7.5	전라남도		
장흥	장평	등촌	490-4	도	469.8	7.5	국(농림부)		
장흥	부산	호계	252-5	임	451	7.5	국(건설교통부)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2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곡성군 소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곡성군 소재)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4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호	곡성 석곡리 석불입상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81-6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호	곡성 도동묘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6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9호	곡성 수성당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000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곡성 옥과향교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5-1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생략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다음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확인처

-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문화예술과 자료실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7. 6. 1

4. 연 락 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 전화 061-286-5462

○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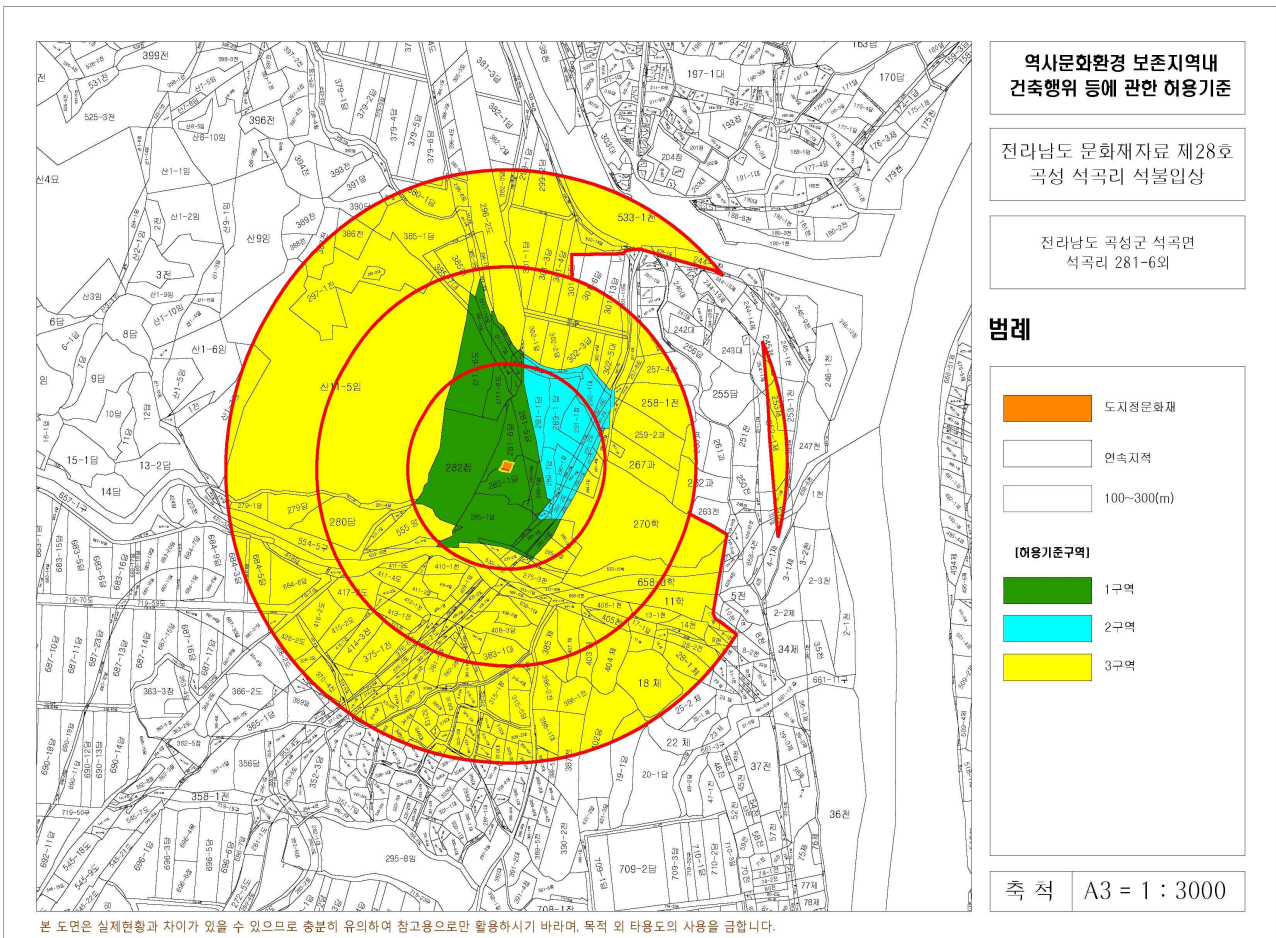
- 주 소 : (우)(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연락처 : 전화 061-360-8363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호 「곡성 석곡리 석불입상」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81-6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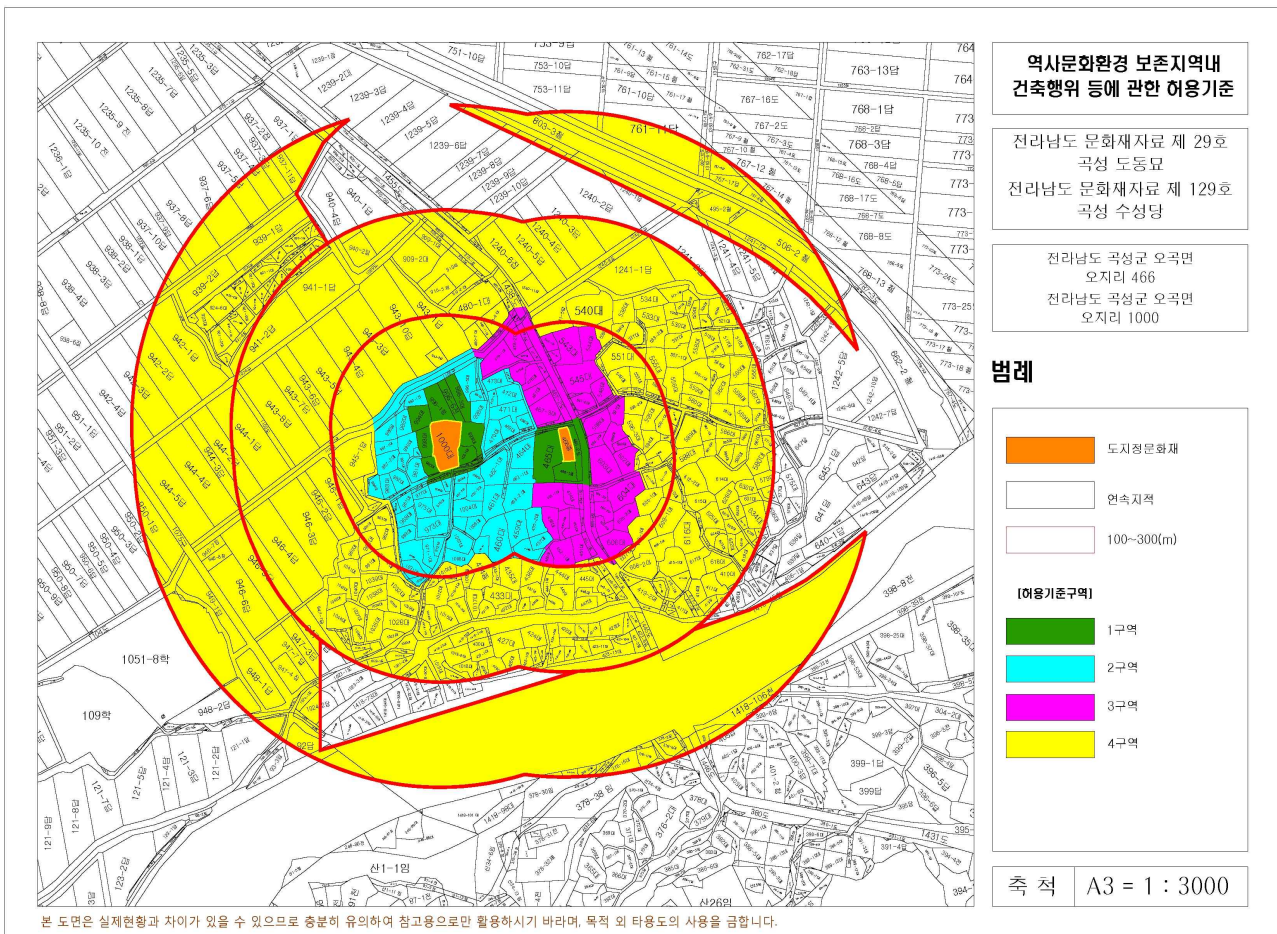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곡성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자연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호「곡성 도동묘」,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9호「곡성 수성당」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6,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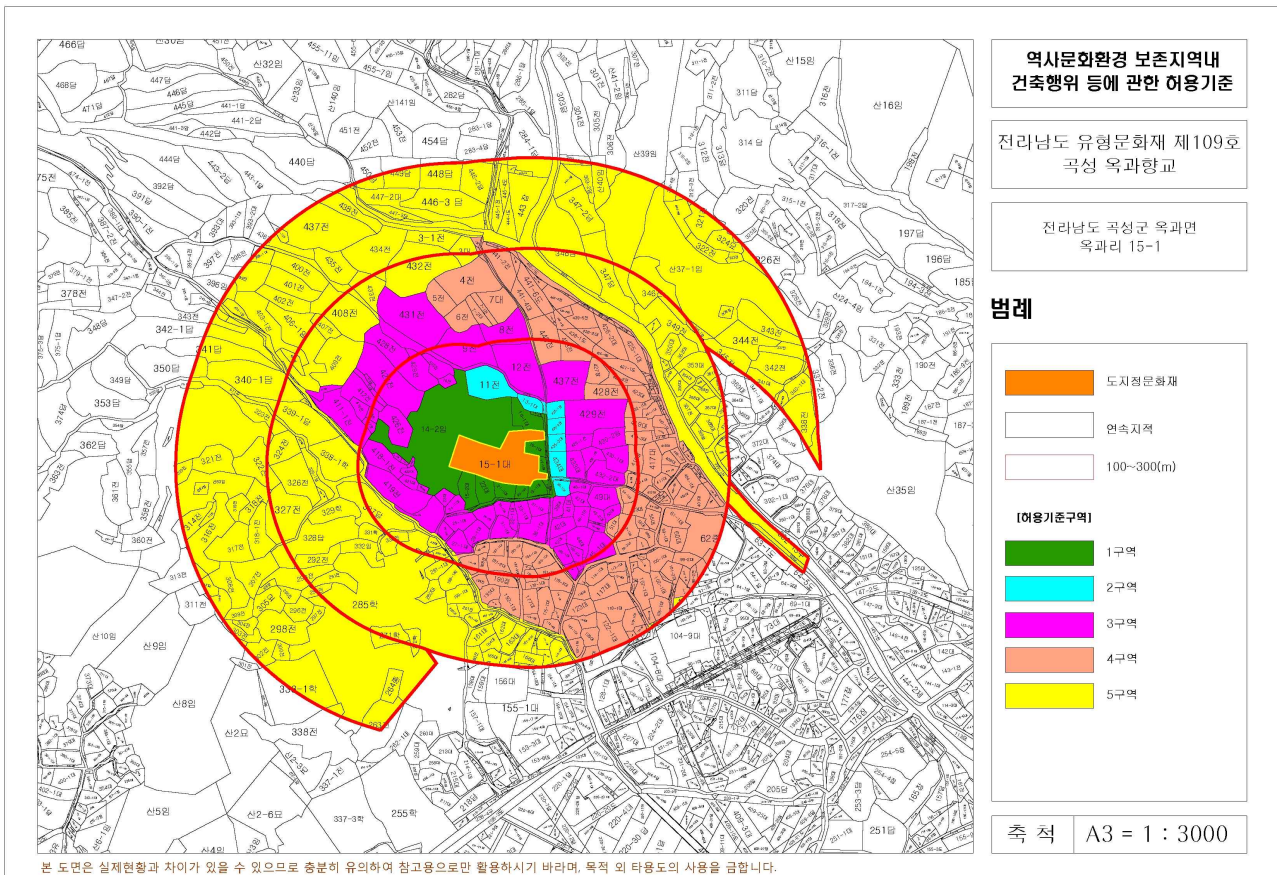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곡성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곡성 옥과향교」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5-1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곡성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정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지방도	840호	광양-입면선	전남 순천시 서면 지분리 일원	1,345	서면 지분리 596-3	서면 지분리 589-1	-	0.15
변경					1,376	서면 지분리 596-3	서면 지분리 589-1	-	0.1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도840호선 갯길정비사업(순천 서면)

○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교통 편리성 확보를 위한 갯길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정) 2016. 11. ~ 2017. 6.

(변경) 2016. 11. ~ 2017.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다음

5. 지형도면 : 게재생략(1/1,200 지적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061-339-7043)

순천시 도로과(☎ 061-749-63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정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	순천	서면	지본	591-1	답	991	986	5	-	최경순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금평길 174	
1-1	순천	서면	지본	591-5	답	-	4	-	4	최경순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금평길 174	
2	순천	서면	지본	590-13	대	21	1	21	-	김금자	679-1	
2-1	순천	서면	지본	590-17	대	-	20	-	20	김금자	679-1	
3	순천	서면	지본	590-11	대	144	139	10	-	김금자	590-11	
3-1	순천	서면	지본	590-16	대	-	5	-	5	김금자	590-11	
4	순천	서면	지본	590-10	전	30	30	1	1	국유지	기획재정부	
5	순천	서면	지본	590-4	대	511	511	15	-	김석만	590-4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순천시 서면 지본리	590-13	상가	블록,함석	33㎡	김금자	순천시 서면 지본리 590-11	
2	순천시 서면 지본리	591-3	가추	판넬	12.2㎡	김금자	순천시 서면 지본리 590-11	

지 형 도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4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산림사업의 종 류	등 록 연월일	소 재 지	비고
만송나무병원 주식회사	김선영	전남2017-020	나무병원	2017.5.29.	전남 화순군 춘양면 춘양로 106, 101호	

전라남도 고시 제2017-196호

녹동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시행계획 고시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녹동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 전라남도지사
 - 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 항만명 : 녹동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가. 공사의 명칭 : 녹동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 나.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신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 접안시설(일반부두 : 3천DWT급×1선석 110m, 모래부두 : 5천DWT급×1선석 130m), 외곽시설(준설토투기장 호안 590m), 대체선착장 120m, 녹지조성 및 배후지 정비 1식
5. 공사기간 : 2018. 3. ~ 2023. 3.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46억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061-286-6841)

전라남도 공고 제2017-504호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연 번	조 례 안 명	소관부서
1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포츠산업과
2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제협력관
4	전라남도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의료과
5	전라남도 한열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의료과
6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소통실
7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소통실
8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소통실
9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산림자원연구소
10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자원연구소
11	전라남도 재정계획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담당관실
12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담당관실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어린이 :” 를 “어린이:”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학생 :” 을 “청소년:”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군인: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일반사병 또는 이에 준하는 전환복무자(의무소방원·의무경찰대원)

제2조제3호라목 중 “일반 :” 을 “일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1조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과” 를 “다음 표와” 로 하고, 같은 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종합사격장” 을 “국제사격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하며, 도의회 및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전까지(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일까지)” 를 “전까지”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위탁의 철회)” 를 “(위탁의 해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회” 를 “해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철회하고자” 를 “해지하고자”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위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위탁자로 본다.

[별표 2]

체 육 시 설 사 용 료(제6조 제1항 관련)

2. 일시사용료

○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종합체육관·체육회관

(단위 : 원)

구분	사용 구분	기준	1인당 사용료						비 고
			개 인			단 체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경기장	1회 2시간	1,000	700	500	700	500	3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레슬링, 펜싱	1회 2시간	1,000	700	500	700	500	300	
전라남도 체육회관	실내종목	1회 4시간	3,000	2,000	1,500	2,000	1,500	700	

6.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일 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입장료	1인1회	400	200	100	단체는 기준액의 50%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

7. 사격장의 숙소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일 반	1일1인당	10,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1일1인당	5,000	
•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가 실비부담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 “사무중 일부를 도 산하기관이 아닌”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도 산하기관이”를 ““민간위탁”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하에”를 “아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기관”이라 함은 도지사의”를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으로, “도 산하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관사무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을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례나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을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으로, “사무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제4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단하여 위탁하여야”를 “판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도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를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로, “전문가중”을 “전문가 중”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에게는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 등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할 때에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약체결등)”을 “(협약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약등”을

“계약 해지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여야” 를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당징수등” 을 “부당징수 등”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 한다.

제10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를 “제1항에 따라 해당”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관계임원” 을 “관계 임원” 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무의 재위탁) 수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간위탁사무(제4조제3항 관련)

소 관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여성가족정책관	① 전라남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② 전라남도 청소년상담 자원센터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에너지산업과	①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신·재생에너지 운영 관련 법인·단체
총무과	① 전남도청 비둘기 어린이집 관리 운영	도내대학 또는 보육 관련 단체·법인
관광과	① 관광 관련 종사원 교육 ② 관광의 날 기념행사 ③ 전남관광 홍보관 운영 ④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⑤ 관광안내소 운영 ⑥ 관광전남 홍보 캠페인 ⑦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관광 관련 법인·단체
스포츠산업과	① 전라남도체육시설관리·운영	체육 관련 법인·단체
문화예술과	① 전라남도옥과미술관 관리·운영 ② 전라남도고인돌공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 ③ 남도소리올림터 관리·운영	문화예술사업 관련 법인·단체 문화재 관련 법인·단체 문화예술사업 관련 법인·단체
사회복지과	①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 사무 1. 모자보건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2.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가족보건복지 관련 법인·단체
보건의료과	① 한센병에 관한 다음 사무 1.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한센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난치성 한센환자의 입원치료 6. 한센병 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 7. 신환자 발견을 위한 일반피부와 진료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그 밖에 한센병 관리와 관계하여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9.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② 이동응급 의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차량 및 장비관리·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2. 장비활용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한센 관련 법인·단체 또는 한센병 치료 관련 병원 외상전문치료 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탁기관
보건의료과	3. 그 밖에 이동응급 의료세트 관리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다음 사무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 또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 적십자사 등
	④ 결핵환자에 관한 다음 사무 1. 결핵환자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2. 결핵관리요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결핵관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X-ray 필름 판독에 관한 사항 5. X-ray 이동 검진에 관한 사항 6. 결핵 등록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결핵예방 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결핵전문 치료 병원
	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홍보 · 교육에 관한 사항	에이즈예방 및 퇴치 관련 법인 · 단체
	⑥ 그 밖에 보건증진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2.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전염병관리자)교육 3. 기생충질환 감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 지원 · 검진 · 보건교육 등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검진 관련 전문 기관 · 단체
식품의약과	① 전라남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건산업진흥원, 대학 · 산업대학 비영리법인 · 단체
농식품유통과	① 남도장터(JNmall) 운영	전자상거래 관련
	② 남도장터(JNmall) 추가입점 및 입점업체 개별 홈페이지 구축	법인 · 단체
해양항만과	① 지방무역항 및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 관리에 관한 사무	여객선터미널 운영 관련 법인 · 단체
도로교통과	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법인 · 단체
해양수산과학원	① 전라남도 전복양식업 관리 · 운영	어업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 을 “전라남도민”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하 “전남산품” 이라 한다)이란 전라남도 내에” 를 “이란 전라남도”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남산품” 을 “전라남도 생산품(이하 “전남산품”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도의 책무)” 를 “(도지사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 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로 한다)” 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전남산품의 수출 지원” 을 “지원계획” 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 중 “행사 등” 을 “행사”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등” 을 “교육” 으로 한다.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6”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응급의료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① 전라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5.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본문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을 “위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려하기” 를 “권장하기” 로 한다.

제3조 중 “장려하는데” 를 “권장하는데” 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헌혈장려” 를 “헌혈권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 을 “그 밖” 으로 한다.

제5조 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헌혈장려” 를 “헌혈권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차원에서 기리고” 를 “기리고”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 를 “뜻은 다음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18민주유공자(이하 “유공자” 라 한다)” 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 이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이하 “생계지원비” 라 한다)” 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의 범위) 생계지원비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자로 하되,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생계지원비는 유공자에게 지급하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 중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지급순위에 따라 1가구에만 지급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생계지원비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생계지원비 지급신청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지원비 신청서를 읍·통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을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부.” 를 “1부”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부.” 를 “1부”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유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주소,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2호 중 “7일” 을 “20일” 로, “결정 반드시 신청자에게” 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로, “결정통지서(별지 2호서식)를 송부한다” 를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신청한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그 유족 또는 가족” 을 “유가족” 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생계지원비 지급변동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를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지원비 지급변동신고서” 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다음달” 을 “다음 달”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외” 를 “다른 시·도” 로 한다.

제10조 중 “도비보조금” 을 “보조금” 으로, “준용 한다” 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계지원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지원비 지급대장” 으로, “관리한다” 를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중 “생계지원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지원비 지급대장 등”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 1. 1.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0.0.)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유 공 자	성 명		주 소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원조례 제5조에 의거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 읍면동장 귀하 실거주 확인 아통장(인)							
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수급권자 주소 : . . . ~ . .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 ○ 국가유공자 : 급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0.0.)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변동신고서

유 공 자	성 명		주 소			
	구 분	사망, 부상, 기타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신고사유	사망, 5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 기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시군 읍면동장 귀하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센터를 법인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직접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센터장 1인”을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원봉사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로, “단체가”를 “법인 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원봉사센터간”을 “센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원봉사센터의”를 “센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 등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회계 년도의”를 “회계연도의”로, “당해 회계 년도”를 “해당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회계 년도”를 각각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상훈법」이”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로 한다.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한국자유총연맹회원” 이라 함은” 을 “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한국자유총연맹사업” 이라 함은” 을 “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 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 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조금” 으로, “사업 완료 즉시” 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로 한다.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과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란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 가정”이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다자녀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10. “입장료”란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시설사용료”란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 집, 회의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의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시설사용

제4조(개방 및 제한) ① 휴양림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양림 내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소란행위 등 휴양림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조제7호의 지역주민
3. 제2조제9호의 다자녀 가정
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5. 전라남도 명예도민
6.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
7. 전라남도 완도수목원과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 이용자
8. 숲속의 집, 회의실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가정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숲속의 집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1조(이용 시간 등)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편익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휴양림의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장 시설예약 등

제13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숲속의집, 회의실 등 시설사용 예약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다.

② 예약자는 예약 당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약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자가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위약금 처리)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약금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환불 처리) 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과오납한 자에게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③ 환불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숲속의 집 객실 이용 요금 감면	장애인 (1실에 한함)	1~3급	50%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 (1가족실)만 해당
		4~6급	30%	
	수급자 (1실에 한함)	-	30%	
	다자녀 가정 (1실에 한함)	-	20%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그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주중”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앞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앞날을 말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 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환급기준	
		사용예정일	환 급 비 율
성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총요금의 100%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90%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70%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통보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비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2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0%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9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 없이 불참	총요금의 80%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 처리 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환급기준	
		사용예정일	환 급 비 율
성수기	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10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0%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10%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30%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50%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예약금 및 손해배상액
비수기	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2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0%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1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120%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없음	총요금의 100%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완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을 “완도수목원”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군경”을 “군인”으로, “군인과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군인(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 사회복지요원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수목원은”을 “완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월요일로 하며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를 “월요일. 이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공무수행”을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전라남도(이하 “도”이라 한다) 명예도민

제6조제14호 및 제15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8.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19.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람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호 내지 제14호, 제17호 내지 제1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편익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별표1과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 장 요 금 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2,000	1,500	1,000	
단 체	1,500	1,000	500	

※ 완도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입장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체험료 단가표(제8조 제3항 관련)

○ 목공예 체험

(단위 : 원)

품 목	단가	소요 시간
생태공예 소품만들기 (목걸이, 곤충 등)	3,000	30분
	5,000	1시간
목공예 소품만들기 (소형수납장, 다과상, 의자 등)	10,000	1시간
	30,000	2시간
	50,000	3시간

○ 숲해설 체험

(단위 : 원)

체 험 명	단 가	소요 시간
완도수목원 난대림 숲 해설 체험	10,000	1시간
	20,000	2시간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숲 해설 체험비용은 무료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을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촉직위원은 전라남도회의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5명과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를 “위촉직위원은 전라남도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5명과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를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7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전라남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7-50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150835)	주식회사 데일리 (김동하)	전남 순천시 가곡길 88, 1층 (가곡동)	2017. 5 25.
토목공사업 (150821)	주식회사 청룡건설 (최부영)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읍동길 30-3	2017. 5 25.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1호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조 례 안 명	소관부서
전라남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정 과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등록”을 “등록,”으로,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한다)”을 “등”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증명 등”을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2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150836)	주식회사 제이디에스종합건설 (장동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137 리동 3호	2017. 5 26.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5호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장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 제정 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불법행위 신고활성화 및 근절 등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 근거 마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고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
 - 신고·고발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의 위임 등을 명시
4.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 다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전라남도지사(참조: 도로교통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서식

입법 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의견제시

○ 제출할 곳

- 우 534-700/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전화 : 061-286-7422 팩스 : 061-286-4804, 이메일 : dongmigo70@korea.kr)

○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법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 관련)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고
1. 자기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법 제56조)	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법 제11조의2제3항)	150,000	
3.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150,000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법 제43조제2항)	회수금액의 10% : 다만, 백 원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200,000	

■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E-mail			
	입금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시 분)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위반장소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행위 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귀하				

■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 번	신고 일자	접 수 내 용									접수자	지 급 내 용				
		신고인					피 신 고 인					지급 일자	지급 방법	사유	지급액 (원)	입금 계좌 (은행명)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 유형	성명	주소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행위 내용						

주 : 형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6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토목공사업 (150822)	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김종후)	전남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46, 상기동 102호	2017. 5 29.

전라남도 공고 제2017-51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 등록 변경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 구분	변경 내역		비고
			당 초	변 경	
제2005-1- 전라남도-18호	나주장애인지원생활센터	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성길 41-7	전남 나주시 학생운동길 18	

전라남도 공고 제2017-521호

전라남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 근거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전라남도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전라남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예비비지출 결정액 : 94억 1천 5백만원

- 일반회계 : 90억 1천 5백만원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4억원

○ 예비비지출액 : 93억 9천 3백만원

- 일반회계 : 89억 9천 3백만원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4억원

○ 주요지출 내역 :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등 19건

전라남도 공고 제2017-526호

녹동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녹동신항 일반·모래부두 건설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라남도지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가. 성명(또는 명칭) : 전라남도지사
 -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가. 항만명 : 녹동신항
 -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녹동신항 일반부두 및 모래부두 건설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래 항만시설용지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준설토 투기장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신항 일원
 - 나. 공사의 규모 : 접안시설(일반부두 : 3천DWT급×1선석 110m, 모래부두 : 5천DWT급×1선석 130m), 외곽시설(준설토투기장 호안 590m), 대체선착장 120m, 녹지 조성 및 배후지 정비 1식
 - 다. 공사의 기간 : 2018. 3. ~ 2023. 3.
 - 라. 공사의 방법 : 지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시 고시 제2017-86호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조정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7. 6. 1

목포시장

1.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 음
2.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생 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8	6	국지 도로	103	광2-1 용당동 183-30도	소3-185 용당동 171-13대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80호 (87.6.5)	
변경	소로	3	188	6	국지 도로	103	광2-1 용당동 183-30도	소3-185 용당동 171-13대	일반 도로			선형 일부변경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88	소로3-188	○ L=103m, B=6 - 일부선형변경	• 진출입 차단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중점부 선형변경

목포시 고시 제2017-95호

목포 도시관리계획(학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목포 중앙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학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7. 6. 1

목포시장

1.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 음
2.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생 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4	목 포 중앙고교		목포시 대양동 208번지	22,601	증)1,081	23,682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변경	79	초등학교		목포시 대양동 224-1전	12,420	감)4	12,416	목포시고시 제2007-42호 (2007.5.11)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4	목포중앙고교	변경 증) 1,081㎡	·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체육관 증축 등)을 위한 변경
79	초등학교	변경 감) 4㎡	· 중앙고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한 경계변경

○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1)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지 적 도시자연공원구역	목포시 석현동 일원	984,940	감)934	984,006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2)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4	목포시 석현동 일원	감) 934	· 중앙고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 자연공원구역 일부 변경

목포시 공고 제2017-62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70) 실시계획 공고

1. 목포시 남교동 10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도심관통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1

목포시장

■ 실시계획 공고 내용

구분 항 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남교동 103-4번지 일원 (목포시 남교동 코리안버베큐~ 한일상화)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도로(중로1-70호선) ○ 사 업 명 : 도심관통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사업 규모 : 도로개설 L=95m, B=20m	
4.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 성 명 : 목포시장(도시재생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착수일 : 2017. 6.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1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 도서 : 개재 생략(도시재생과 비치)	
8. 실시계획 공고	○ 공람 기간 : 2017. 6. 1. ~ 6. 15.(14일간) ○ 공람 장소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트윈스타 5층)	
8.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3649(도시재생과)	

가.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예정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합 계				9,114.9	1,503.7					
1	창평	19	도	4,978.0	145.0	국	국토교통부			
2	남교	152	도	889.3	225.0	국	국토교통부			
3	남교	104-3	대	85.0	85.0	목포시 양율로 121, 103동 1301호 (산정동 종원나이스빌)	조월형	목포시 용당동 1052	목포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 당권
4	남교	106-25	대	35.9	35.9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60번길14, 101동 603호 (남약리젠시빌)	서중정	여수시 여문1로54 (여서동)	근해유망 수산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5	남교	104-1	대	42.0	42.0	목포시 남교동 104-1	조철기			
6	남교	101-14	대	58.6	58.6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949-1	오광록 외 1인			
7	남교	101-15	대	38.2	38.2	목포시 남교동 101-7	최귀태			
8	남교	101-13	대	29.7	29.7	목포시 남교동 101	문정룡			
9	남교	101-12	대	61.0	61.0	목포시 남교동 101-4	최재환			
10	남교	101-11	대	59.6	59.6	목포시 호남동 10-31	오순례			
11	남교	101-10	대	91.0	91.0	목포시 산정동 326-10 근화아파트 101동 109호	장대화			
12	남교	101-16	대	36.0	36.0	목포시 양동 86-53	안숙자			
13	남교	101-9	대	74.6	74.6	목포시 삼일로 21-3 (남교동)	김종심			
14	남교	151-1	구	58.5	58.5	국	국토교통부			
15	남교	100-2	대	207.0	207.0	목포시 남교동 100	서명수			
16	남교	98-7	대	6.1	6.1	공	목포시			
17	남교	98-2	대	47.5	47.5	목포시 남교동 98-2	김석규			
18	남교	96-1	도	437.6	15.0	공	목포시			
19	남교	150	도	1,846.3	169.0	국	국토교통부			
20	호남	7-6	대	20.0	6.0	공	목포시			
21	호남	7-93	대	13.0	13.0	공	목포시			

나.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형식	면적(㎡)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1	남교	106-1	대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19.14	서중정		김산남 김종기 윤재필 고진		
		107-41	대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14.52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70.19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4.6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5.25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2.60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1F	2.94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1F	2.88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3.1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3.12					
				기타	계단	콘크리트		6.00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2F	89.88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12.00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9.1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2F	3.30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2F	1.26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2F	4.25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2F	5.04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2F	3.1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2F	3.12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기타	계단	콘크리트		6.00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3F	90.42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3F	7.30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3F	3.36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3F	2.80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3F	4.08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3F	3.1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3F	3.12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3F	1.54					
				기타	계단	콘크리트		6.00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4F	123.4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4F	1.92					
				기타	대문	사시		4.00					
2	남교	104-3	대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54.04	조월형		이승현		
				기타	계단	콘크리트		3.63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57.68					
3	남교	104-1	대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17.02	조철기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10.91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3.96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4.00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3.06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3.15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스레트	0.99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2.16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3.51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7.87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1.25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1.40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0.77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13.78					
				기타	계단	콘크리트		1.20					
				기타	대문	샤시		2.00					
4	남교	101-6	대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6.60	오광록 최종호		김산동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5.48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4.60					
				기타	계단	목재		1.52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1.55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14.70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8.64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9.50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스레트	3.24					
				기타	대문	샤시		1.00					
5	남교	101-7	대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16.62	최귀태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3.82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1.22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20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4.20					
				기타	계단	목재		1.12					
				기타	계단	콘크리트		1.40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2.72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9.20					
				기타	대문	샤시		1.00					
6	남교	101-5	대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10.50	문정룡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5.76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9.62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1F	5.88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1F	1.68					
				부속사	보일러실	블록	슬래브1F	1.08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2.10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2.42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기타	계단	콘크리트		1.80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6.65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5.25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0.71					
				기타	대문	사시		1.00					
7	남교	101-4	대	건물	상가	벽돌	슬래브1F	29.50	최재환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14.30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1.54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1F	0.90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1F	0.90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7.70					
				기타	계단	목재		2.00					
				기타	계단	콘크리트		1.4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16.9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10.54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9.52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12.02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2F	5.97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2F	10.16					
				기타	가추		스레트	5.87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기타	계단	콘크리트		0.96					
8	남교	101-3	대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53.90	오순례		김미자 오성애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6.24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8.75					
				기타	계단	콘크리트		4.6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1.62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1F	1.98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1F	2.97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2F	26.64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10.23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6.44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6.29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5.92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2F	3.36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2F	2.97					
				부속사	보일러실	블록	슬래브2F	1.68					
				기타	계단	콘크리트		1.32					
				기타	담장	블록		3.00					
				기타	대문	샤시		2.00					
9	남교	101-2	대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39.60	장문순		김항례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21.24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12.82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2.97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12.56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1F	1.65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2.80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2.10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1F	1.54					
				기타	계단	콘크리트		2.24					
				기타	계단	콘크리트		3.64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2F	87.91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3F	12.47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3F	12.90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3F	21.98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3F	14.52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3F	3.20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3F	1.96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3F	2.38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3F	3.64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3F	5.28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형식	면적(㎡)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부속사	창고	블록	슬래브3F	10.03					
				기타	계단	콘크리트		3.28					
				기타	대문	샤시		1.00					
10	남교	101-8	대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28.16	안숙자 김종심		김삼남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9.36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0.45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스레트	2.56					
				부속사	보일러실	블록	스레트	1.00					
				기타	계단	철재		0.90					
				건물	주택	조립식	조립식	10.00					
				기타	대문	샤시		2.00					
11	남교	101-1	대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55.59	안숙자 김종심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4.82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3.05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4.64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2.94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스레트	2.08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스레트	2.18					
				기타	가추		스레트	8.22					
				기타	대문	샤시		4.00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형식	면적(㎡)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12	남교	151	구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17.50	김오진		서명수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5.70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3.36					
				부속사	보일러실	블록	스레트	2.38					
				기타	계단	목재		0.78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0.50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1.60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10.53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2.76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스레트	1.21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5.40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5.40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5.80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8.82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8.82					
				건물	주택	블록	스레트	3.71					
				기타	계단	목재		1.19					
				기타	대문	사시		1.00					
13	남교	100	대	건물	상가	벽돌	슬래브1F	31.36	서명수		김선민 김대근		
				건물	상가	벽돌	슬래브1F	26.88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형식	면적(㎡)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5.29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8.05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3.48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4.40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5.10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6.75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1.95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2.72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10.8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21.15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4.8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14.62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6.12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9.62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6.8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4.75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5.58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16.14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6.6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1F	4.62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1F	1.04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1F	1.00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1F	1.00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1F	1.08					
				부속사	보일러실	벽돌	슬래브1F	6.30					
				기타	계단	콘크리트		3.96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1F	18.00					
				건물	상가	벽돌	함석	29.16					
				건물	상가	벽돌	함석	34.30					
				건물	주택	벽돌	함석	3.36					
				부속사	창고	벽돌	함석	2.02					
				부속사	화장실	벽돌	함석	1.76					
				기타	계단	콘크리트		4.62					
				건물	주택	벽돌	함석	14.40					
				건물	주택	벽돌	함석	18.2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11.38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14.72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8.1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2F	7.60					
				건물	주택	벽돌	함석	24.63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 형식	면적 (㎡)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부속사	창고	벽돌	함석	4.20					
				부속사	창고	벽돌	함석	3.08					
				건물	주택	벽돌	스레트	16.33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스레트	7.95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2F	5.51					
				부속사	보일러실	벽돌	슬래브2F	1.71					
				부속사	창고	벽돌	함석	3.85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2F	9.54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2F	0.99					
				부속사	화장실	벽돌	슬래브2F	0.99					
				기타	계단	콘크리트		4.68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3F	10.01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3F	13.20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3F	8.05					
				건물	주택	벽돌	슬래브3F	8.32					
				부속사	창고	벽돌	슬래브3F	5.75					
				기타	대문	사시		3.00					
14	남교	98-2	대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1F	29.90	김석규				
				기타	계단	철재		2.08					
				기타	담장	블록		7.04					

연번	소재지			가옥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비고
	동	지번	지목	건물구분	물건종류	구조	지붕형식	면적(m ²)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9.62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14.24					
				건물	주택	블록	슬래브2F	3.84					
				부속사	화장실	블록	슬래브2F	2.21					
				기타	계단	철재	공란	2.16					
				부속사	보일러실	블록	슬래브2F	3.84					
				기타	대문	철재	공란	1.00					

여수시 고시 제2017-129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묘도동 산19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묘도 재개발 진입도로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사업규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시 점	총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08	22.25~27.00	보조간선 도로	1,535	여주시 묘도동 산199-6	여주시 묘도동 201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53	10	집산도로	365	여주시 묘도동 산199-7	여주시 묘도동 산39-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54	10	집산도로	275	여주시 묘도동 1967-1	여주시 묘도동 산199-7	일반 도로	

- 나. 사업면적: 105,30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나.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
5. 사업시행기간(변경) : ┐ 당초 : 2014. 3. 27. ~ 2017. 5. 31.
 └ 변경 : 2014. 3. 27. ~ 2017.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계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관계도서(변경): 여수시 도시계획과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061-650-6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17-1093호

여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 나. 명 칭 : 신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준공 면적 또는 규모 : 4,94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 2014. 4. 17.(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나. 공사완료일 : 2014. 7. 25.
 - 다. 준공검사일 : 2017. 5. 23.
6. 준공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신월동	1240-17	잡	54,333	4,946	여수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17-7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순천시장

1. 사업 위치 : 순천시 연향동 797-38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내용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	연장 및 폭	주소	성명		
팔마(체육관)사거리 ~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공사	도로	중로 1-57	136,357	L=1.87km B=24m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로과장)	2013. 9. 5. ~ 2017. 6. 30.	당초
							2013. 9. 5. ~ 2017. 12. 31.	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로과(☎ 061-749-6346) 및 도시과(☎ 061-749-631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천시 공고 제2017-87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7. 6. 1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저전동 11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명 칭	시설 및 규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규 모	주 소	성 명	
도 로	저전동 미래마트·원동교 인도개설사업	중로 3 - 5	A=366㎡ L=115m B=2m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이 해 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1	순천시	저전동	406	천	31,243	19		건설부	
2	순천시	저전동	409	도로	164	80		건설부	
3	순천시	저전동	56-45	대지	50	50	순천시 저전동 56-9	이강록	
4	순천시	저전동	56-46	대지	5	5		순천시	
5	순천시	저전동	57-5	대지	13	13		순천시	
6	순천시	저전동	421-52	도로	19	13		순천시	
7	순천시	저전동	114-15	대지	35	35		순천시	
8	순천시	저전동	114-2	도로	76	22	순천시 옥천동 41	강영순	
9	순천시	저전동	114-16	대지	14	14		순천시	
10	순천시	저전동	410	도로	29	5		건설부	
11	순천시	저전동	410-14	도로	13	9		순천시	
12	순천시	저전동	114-17	대지	14	14		순천시	
13	순천시	저전동	114-18	대지	33	33	순천시 서문로 34-1	박춘만	
							서울시 상복구 동소문로42길 5-14, 3층동	서광례	
14	순천시	저전동	110-2	도로	436	29	순천시 옥천동 41	강영순	
15	순천시	저전동	110-4	대지	7	3		순천시	
16	순천시	저전동	56-13	도로	26	12		순천시	
17	순천시	저전동	58-1	도로	185	8	장천동 126	조석남	
18	순천시	저전동	421-1	도로	232	2		건설부	
합 계						366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지장물 소재지	편입지장물 종 류	수량 및 면적	지장물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저전동 56-33	가옥 (조적 스텔트)	55.59㎡			
		대문(철제)	1식			
2	저전동 56-45	창고 (조적 스텔트)	24.9㎡	저전동 56-9	이강록	
		담장	81.84㎡			
		콘크리트 미당	74.80㎡			
		대문(철제)	1식			
3	저전동 114-18	가옥 (조적 기와)	103.85㎡	순천시 서문로 34-1	박춘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2길 5-14, 3층	서광례	
		창고 (조적 기와)	11.31㎡			
		담장	33.84㎡			
		대문(철제)	1식			

순천시 공고 제2017-873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 공고합니다.

2017. 6. 1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내용

명 칭	종 류	규 모(변경)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주 소	성 명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문화시설, 도로	합 계		문화시설	도로 (소로1-299)	도로 (소로1-300)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시재생과장)	2017. 3. 30. ~ 2018. 12. 31.
		당초	12,615㎡	10,789㎡	B=10m, L=110m, A=1,160㎡	B=10m, L=60m, A=666㎡			
		변경	12,607㎡	10,789㎡	B=10m, L=110m, A=1,158㎡	B=10m, L=60m, A=66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061-749-6316) 및 도시재생과(061-749-5955)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조성사업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시설별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대			소계	문화 시설	소로 1-299	소로 1-300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1	순천시 영동	1	-		대	1,679	1,679	1,679	-	-	순천시	-	-	-	-	
2	순천시 영동	1	-	3	대	296	296	296	-	-	순천시	-	-	-	-	
3	순천시 영동	1	-	4	대	419	419	419	-	-	순천시	-	-	-	-	
4	순천시 영동	1	-	5	대	35	35	35	-	-	순천시	-	-	-	-	
5	순천시 영동	5	-	4	대	373	373	373	-	-	유대철	순천시 연향동 1659 연향대주피오레A 102-1101	근저당	울촌농업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62-2	
6	순천시 영동	5	-	5	대	210	210	210	-	-	박귀주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643	-	-	-	
7	순천시 영동	5	-	8	대	16	16	16	-	-	위숙진	경기 부천시 소사동 심곡본동 617-11 롯데A 2-707	-	-	-	
8	순천시 영동	5	-	11	대	10	10	10	-	-	유대철	순천시 연향동 1659 연향대주피오레A 102-1101	근저당	울촌농업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62-2	
9	순천시 영동	5	-	12	대	218	218	218	-	-	유대철	순천시 연향동 1659 연향대주피오레A 102-1101	근저당	울촌농업협동 조합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62-2	
10	순천시 영동	5	-	13	대	7	7	7	-	-	위숙진	경기 부천시 소사동 심곡본동 617-11 롯데A 2-707	-	-	-	
11	순천시 영동	8	-		대	340	340	340	-	-	노영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1길 52(사당동)	근저당 지상권	농협은행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7가) (순천중앙지점) 서울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7가)	
12	순천시 영동	12	-	1	대	254	254	217	37	-	순천시	-	-	-	-	
13	순천시 영동	12	-	2	대	216	216	157	59	-	순천시	-	-	-	-	
14	순천시 영동	12	-	10	대	202	202	191	11	-	순천시	-	-	-	-	
15	순천시 영동	12	-	3	대	20	20	20	-	-	순천시	-	-	-	-	
16	순천시 영동	12	-	4	대	256	256	256	-	-	순천시	-	-	-	-	
17	순천시 영동	12	-	5	대	208	208	208	-	-	순천시	-	-	-	-	
18	순천시 영동	12	-	6	대	218	218	218	-	-	강봉임	순천시 영동 12-6	-	-	-	
19	순천시 영동	17	-		차	1,187	1,187	991	72	124	순천시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시설별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	부번			소계	문화 시설	소로 1-299	소로 1-300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20	순천시 영동	18	-	20	도	618	277	-	83	194	국 (건설교통부)	-	-	-	-	
21	순천시 영동	18	-	32	대	79	79	20	46	13	순천시	-	-	-	-	
22	순천시 영동	18	-	51	대	76	65	-	20	45	순천시	-	-	-	-	
23	순천시 영동	18	-	52	대	70	5	-	5	-	순천시	-	-	-	-	
24	순천시 영동	18	-	53	대	18	18	-	-	18	순천시	-	-	-	-	
25	순천시 영동	18	-	54	대	31	31	-	-	31	순천시	-	-	-	-	
26	순천시 영동	21	-	2	도	36	4	-	-	4	국 (건설교통부)	-	-	-	-	
27	순천시 영동	21	-	3	대	43	41	10	-	31	국 (기획재정부)	-	-	-	-	
28	순천시 영동	21	-	7	도	43	43	43	-	-	순천시	-	-	-	-	
29	순천시 영동	24	-		차	360	360	357	-	3	순천시	-	-	-	-	
30	순천시 영동	24	-	4	도	46	46	46	-	-	순천시	-	-	-	-	
31	순천시 영동	25	-		대	66	66	66	-	-	순천시	-	-	-	-	
32	순천시 영동	25	-	1	도	23	23	23	-	-	순천시	-	-	-	-	
33	순천시 영동	26	-		대	44	44	44	-	-	순천시	-	-	-	-	
34	순천시 영동	26	-	1	대	42	42	42	-	-	순천시	-	-	-	-	
35	순천시 영동	26	-	2	도	25	25	25	-	-	순천시	-	-	-	-	
36	순천시 영동	26	-	3	도	27	27	27	-	-	순천시	-	-	-	-	
37	순천시 영동	27	-		대	211	211	211	-	-	이은숙	순천시 행동 64-4	-	-	-	
38	순천시 영동	27	-	1	도	13	13	13	-	-	순천시	-	-	-	-	
39	순천시 영동	27	-	3	도	80	80	80	-	-	순천시	-	-	-	-	
40	순천시 영동	28	-		대	117	117	117	-	-	순천시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시설별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	부번			소계	문화 시설	소로 1-299	소로 1-300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41	순천시 영동	28	-	1	도	54	54	54	-	-	순천시	-	-	-	-	
42	순천시 영동	28	-	2	대	14	14	14	-	-	순천시	-	-	-	-	
43	순천시 영동	29	-		대	73	73	73	-	-	순천시	-	-	-	-	
44	순천시 영동	29	-	1	도	43	43	43	-	-	순천시	-	-	-	-	
45	순천시 영동	29	-	2	대	13	13	13	-	-	순천시	-	-	-	-	
46	순천시 영동	30	-		대	63	63	63	-	-	순천시	-	-	-	-	
47	순천시 영동	30	-	5	도	41	41	41	-	-	순천시	-	-	-	-	
48	순천시 영동	31	-	2	도	3	3	3	-	-	순천시	-	-	-	-	
49	순천시 영동	31	-	3	도	163	47	47	-	-	순천시	-	-	-	-	
50	순천시 영동	32	-	2	대	53	53	53	-	-	순천시	-	-	-	-	
51	순천시 영동	32	-	5	대	23	23	23	-	-	순천시	-	-	-	-	
52	순천시 영동	32	-	6	대	33	33	33	-	-	순천시	-	-	-	-	
53	순천시 영동	32	-	7	대	13	13	13	-	-	순천시	-	-	-	-	
54	순천시 영동	32	-	9	대	33	33	33	-	-	순천시	-	-	-	-	
55	순천시 영동	34	-		대	73	73	73	-	-	순천시	-	-	-	-	
56	순천시 영동	35	-	1	대	66	66	66	-	-	순천시	-	-	-	-	
57	순천시 영동	35	-	2	대	46	46	46	-	-	순천시	-	-	-	-	
58	순천시 영동	36	-		대	86	86	86	-	-	순천시	-	-	-	-	
59	순천시 영동	37	-	1	대	73	73	73	-	-	순천시	-	-	-	-	
60	순천시 영동	37	-	2	대	187	187	187	-	-	순천시	-	-	-	-	
61	순천시 영동	38	-		대	83	83	83	-	-	순천시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시설별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번	부번			소계	문화 시설	소로 1-299	소로 1-300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62	순천시 영동	44	-	1	대	10	10	10	-	-	순천시	-	-	-	-	
63	순천시 영동	44	-	2	대	36	36	36	-	-	순천시	-	-	-	-	
64	순천시 영동	59	-	8	도	110	18	-	-	18	순천시	-	-	-	-	
65	순천시 영동	69	-	2	도	7	1	-	-	1	국 (건설교통부)	-	-	-	-	
66	순천시 영동	69	-	5	도	33	1	-	-	1	순천시	-	-	-	-	
67	순천시 영동	70	-		대	7	7	-	-	7	국 (기획재정부)	-	-	-	-	
68	순천시 영동	70	-	2	도	76	76	-	-	76	국 (건설교통부)	-	-	-	-	
69	순천시 영동	70	-	3	대	72	67	-	-	67	순천시	-	-	-	-	
70	순천시 영동	126	-		도	5,789	1,719	1,562	130	27	국 (건설교통부)	-	-	-	-	
71	순천시 영동	126	-	1	대	95	95	95	-	-	순천시	-	-	-	-	
72	순천시 행동	65	-	2	도	508	3	-	3	-	순천시	-	-	-	-	
73	순천시 행동	65	-	91	대	108	108	-	108		김금재	전남 여수시 시청서1길 8-8(학동)	근저당	동광주새마을 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25(산수동)	
74	순천시 행동	65	-	17	대	148	148	21	127	-	순천시	-	-	-	-	
75	순천시 행동	65	-	55	대	10	10	-	10	-	김금재	전남 여수시 시청서1길 8-8(학동)	근저당	동광주새마을 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25(산수동)	
76	[변경]	65	-	92	대	7	7	-	7		김금재	전남 여수시 시청서1길 8-8(학동)	-	-	-	
77	순천시 행동	65	-	67	도	10	2	-	2	-	순천시	-	-	-	-	
78	순천시 행동	79	-	5	대	110	110		110		삼성생명보험 (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79	순천시 행동	81	-	12	도	1,392	279	-	279	-	국 (건설교통부)	-	-	-	-	
80	순천시 행동	81	-	17	대	400	400	400	-	-	순천시	-	-	-	-	
81	순천시 행동	81	-	37	도	182	182	182	-	-	국 (건설교통부)	-	-	-	-	
82	순천시 행동	188	-	1	도	4,942	71	71	-	-	국 (건설교통부)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시설별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	부번			소계	문화 시설	소로 1-299	소로 1-300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83	순천시 행동	188	-	16	대	87	87	87	-	-	순천시	-	-	-	-	
84	순천시 행동	188	-	17	도	56	56	7	49	-	국 (건설교통부)	-	-	-	-	
85	순천시 옥천동	1	-		대	152	152	152	-	-	순천시	-	-	-	-	
86	순천시 옥천동	406	-	6	대	61	61	61	-	-	순천시	-	-	-	-	
합 계						23,899	12,607	10,789	1,158	660						

순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조성사업 지장물 세목조서

일련 번호	편 입 건 물						건 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도로명)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명	종류	
	합계	9건					8명	2명		
1	영동	1	투표합창고 및 사무소건 1동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층 평가건	25평		중앙선관위			
2	영동	5-4, 5-11, 5-12	지하층소극장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57.49	㎡	유대철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층소매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05.31	㎡		주식회사****	전세권	
			2층 의료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43.49	㎡				
			3층연기학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43.49	㎡				
			4층 주택	벽돌조 불연소판넬	84.86	㎡				
			4층다용도실	벽돌조 불연소판넬	15.10	㎡				
			1층 창고	블록 스테트	5.00	㎡				
			바닥	콘크리트	280.00	㎡				
			보안등		1.00	식				
			장독대		1.00	식				
3	영동	5-5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842.075	㎡	서영숙			
			옥상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3.50	㎡				
			화장실	판넬조 판넬지붕	3.00	㎡				
			다용도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2.00	㎡				
			가추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16.00	㎡				
			미당포장	콘크리트	47.40	㎡				
			담장	블록조 H 1.8-2.9M	44.60	㎡				
			대문	철재	1.00	식				
			빨래건조대	철재	1.00	식				
			국기게양대	스텐	1.00	식				
			태양광발전기	3kw	1.00	식				
			위성안테나		1.00	식				
			온풍기		3.00	대				
			에어컨		15.00	대				
			간판		1.00	식				
			CCTV		1.00	식				
			냉장고		15	대				
			TV, TV다이		15	대				
			옷장		15	대				

일련 번호	편 입 건 물						건 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도로명)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명	종류	
3	영동	5-5	침대			15	대			
			세탁기			15	대			
			가스렌지			15	대			
			전자레인지			15	대			
			싱크대			15	대			
			암막커튼			28	대			
			식탁 및 의자			3	대			
			테이블			12	대			
			신발장			15	대			
			티테이블 및 의자			3	대			
			커피포트			15	대			
			책상			3	대			
			기타			1	식			
4	영동	5-8	점포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0.00	㎡	위숙진		
			주택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다락방(20㎡)포함		20.00	㎡			
5	영동	8	바닥포장	콘크리트		343.0	㎡	노영희		
			콘크리트경계석			17.0	m			
			담장	블록조 H 1.2M		59.0	m			
			느릅나무			1.0	주			
6	영동	12-6	지하충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8.20		강봉임		
			1층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기와,판넬		128.50				
			2층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기와		71.80				
			다락방	철근콘크리트		21.90				
			냉난방기			1.00	식			
			에어컨			1.00	식			
			난간	H=1m		35.00	m			
			벽돌담장	H=1.94-2.3m		34.00	m			
			철재대문			3.00	식			
			장독대			1.00	식			
			마당	화강석 포장		28.20	㎡			
			마당	데크		20.90	㎡			
			마당	잔디식재		12.20	㎡			
			마당	콘크리트포장		11.00	㎡			

일련 번호	편 입 건 물					건 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도로명)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명	종류	
6	영동	12-6	가로등		1.00	㎡			
			정화조		2.00	㎡			
			비파나무		1.00	주			
			동백나무		2.00	주			
			철쭉		1.00	주			
			홍가시		1.00	주			
			금목서		1.00	주			
			단풍나무		1.00	주			
			자두나무		1.00	주			
			목련		1.00	주			
			밀감나무		1.00	주			
			소철나무		1.00	주			
			천리향		1.00	주			
			기타		1.00	주			
7	영동	27	점포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지붕 1층	123.58	㎡	이은숙		
			주택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123.58	㎡			
			창고	조적조 판넬 1층	8.00	㎡			
			창고	철근콘크리트 판넬 1층	39.00	㎡			
			정화조	1층 점포 110인용	1.00	식			
			계단	난간 및 난간보호대 포함	1.00	식			
			담장	벽돌 24*1.8	43.20	㎡			
			건사		1.00	식			
			건조대		1	식			
8	행동	79-5	화단		1	식	삼성생명		
			느티나무		7	주			
			주목		3	주			
			영산홍		5	군			
			철쭉		4	주			
			동백나무		2	주			
			눈향나무		1	주			
			감나무		1	주			
			동백나무	大	2	주			
			단풍나무		3	3			
			철망울타리	5*1.5, 수목 포함	7.5	㎡			

일련 번호	편 입 건 물						건 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도로명)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명	종류	
8	행동	79-5	광광이 울타리		30	m				
			영산홍 울타리		15	m				
			조명등		1	식				
			블록담장	15*1.5	22.5	m ²				
			주차장 바닥	8*1.5	12	m ²				
9	행동	65-91	바닥포장		108	m ²	김금재			
10	행동	65-92	창고	연와조, 슬래브	27.10	m ²	김금재			
			동산이전		1	식				

나주시 공고 제2017-585호

나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빚가람동 497-1번지(11호 근린공원) 내 “수질복원센터 상·하수도 자재 관리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빚가람동 497-1번지(혁신도시 11호 근린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수질복원센터 상·하수도 자재 관리창고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공원 전체 면적 : 68,171㎡

○ 금회 사업 규모

번 호			시설명		총괄계획				금회설치 시설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원 (m)	면적 (㎡)	건축연면적 (㎡)	연장 (m)	폭원 (m)	면적 (㎡)	건축연면적 (㎡)	
-	6	14	관리 시설	관리창고	-	-	493	325	-	-	493	325	1동
-	6	13		주 차 장	-	-	247	-	-	-	15	-	
소로	3	1	도로 및 광장	주진입로	28	20	560	-	11	12	132	-	
소로	3	31		시설연결로	10.3	3	30.6	-	10.3	3	30.6	-	
계					38.3	-	1,330.6	325	21.3	-	670.6	325	

※ 공원 전체 지정 건축연면적 : 2,373.39㎡(2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공사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나주시	빛가람동	497-1	공	68,171	670.6		나주시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과 및 상하수도과 비치)

8. 열람기간 : 공고(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나주시 도시과 : ☎ 061-339-8973 / Fax 061-339-2826
- 나주시 상하수도과 : ☎ 061-339-7671 / Fax 061-339-2832

나주시 공고 제2017-596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나주시 빚가람동 841번지 일원 “빚가람 119안전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의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 6. 1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빚가람동 8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3류5호선)사업
 - 명 칭 : 빚가람 119안전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 15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소방서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20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6. 5. 26.
 - 준공일 : 2017. 5. 26.
6. 편입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빚가람동	842	공	476.6	95.4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2	빚가람동	841	도	163.5	30.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3	빚가람동	840	공	114.9	26.9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계		3필지		755.0	152.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17-103호

백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백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및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6. 1

광양시장

1. 사 업 명 : 백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청정 백운저수지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체험·레저 공간으로서 도·농복합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 위 치 : 전남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지곡리 백운저수지 일원
 - 사업면적 : 당초 88,066㎡ → 변경 87,820㎡ (감 246㎡)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전 체	88,066	87,820	감 246	
백운민찬공원	34,223	34,223	-	
초록기운공원	47,432	47,432	-	
수상레저공원	6,411	-	감 6,411	시행방식 변경으로 제척
백운제돌레길	-	6,165	증 6,165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가

○ 사업개요

- 테 마 : 온가족 건강한 즐거움이 있는 “백운호반 청정 자연누리”
- 사업내용 : 과수체험장, 오가늑팜, 생태뚝방, 잔디마당, 계절초화원, 백운지물체험장, 오토캠핑장, 주차장, 산책로 등

4. 사 업 비

- 당초 : 12,553백만원(국비 5,000백만원, 시비 7,553백만원)
- 변경 : 11,300백만원(국비 5,000백만원, 시비 6,300백만원)

5. 사업예정기간 : 2014년 ~ 2017년

- 변 경 없 음

6. 사업의 효과

- 농촌마을 여가활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휴식·체험형 테마공원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객 수요증가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광양시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토지 조서 : 다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61-797-2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운지구농어촌테마공원 토지편입 조서

■ 백운만찬공원 토지편입 조서

번호	토지의 소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읍면	지번	지목			주소	성명	
합계		13필지		118,064	34,223			
1	봉당리	166	유	57,255	3,1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	봉당리	178	유	22,502	18,707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수리조합	
3	봉당리	180	유	56	5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	봉당리	268	유	2,413	63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	봉당리	282	답	2,291	2,29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	봉당리	283	답	2,102	2,10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	봉당리	284	답	889	88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	봉당리	843-1	답	1,821	1,82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	봉당리	846-4	유	115	7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	봉당리	847	답	1,146	96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1	봉당리	848	도	394	46		광양시	
12	봉당리	849	답	2,070	2,070		광양시	
13	봉당리	983-1	구	25,010	1,458		건설부	

■ 초록기운공원 토지편입조서

번호	토지의 소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읍면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합 계		96필지		187,143	47,432		광양시	
1	봉당리	27-5	답	9	9		광양시	
2	봉당리	27-6	답	135	135		국(농림수산부)	
3	봉당리	27-7	유지	63	63		광양시	
4	봉당리	27-8	답	136	136		광양시	
5	봉당리	28-3	답	134	134		광양시	
6	봉당리	28-4	유지	40	40		광양시	
7	봉당리	33-5	전	3	3		광양시	
8	봉당리	36-5	전	156	156		광양시	
9	봉당리	37-1	전	809	809		광양시	
10	봉당리	38-1	전	337	337		광양시	
11	봉당리	38-2	전	287	287		광양시	
12	봉당리	39	임야	780	780		광양시	
13	봉당리	39-1	임야	33	33		광양시	
14	봉당리	40-1	답	116	116		광양시	
15	봉당리	40	임	493	493		광양시	
16	봉당리	41	전	43	43		광양시	
17	봉당리	42-3	전	92	92		광양시	
18	봉당리	42-4	전	275	275		광양시	
19	봉당리	43	답	2,020	2,020		광양시	
20	봉당리	43-1	답	112	112		광양시	
21	봉당리	44	답	1,124	1,124		광양시	
22	봉당리	45-1	유지	161	161		광양시	
23	봉당리	46-1	답	3,627	327		광양시	
24	봉당리	46-2	유지	73	73		광양시	

번호	토지의 소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읍면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25	봉당리	47-2	답	1,284	1,284		광양시	
26	봉당리	48-2	답	68	68		광양시	
27	봉당리	61	유	654	654		광양시	
28	봉당리	61-2	유	3,863	3,863		광양시	
29	봉당리	61-3	유	39	39		광양시	
30	봉당리	62	전	1,145	1,145		광양시	
31	봉당리	62-1	전	62	62		광양시	
32	봉당리	63	전	142	142		광양시	
33	봉당리	64	전	750	750		광양시	
34	봉당리	65-2	도	434	434		광양시	
35	봉당리	65-3	도	17	17		광양시	
36	봉당리	65-4	도	349	349		광양시	
37	봉당리	67-3	전	361	361		광양시	
38	봉당리	67-6	전	116	116		광양시	
39	봉당리	68	전	734	734		광양시	
40	봉당리	69	전	585	585		광양시	
41	봉당리	70	전	512	512		광양시	
42	봉당리	71-1	전	2,069	2,069		광양시	
43	봉당리	72	전	63	63		광양시	
44	봉당리	73-1	전	1,454	1,454		광양시	
45	봉당리	75-1	전	390	390		광양시	
46	봉당리	76-1	답	109	109		광양시	

번호	토지의 소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읍면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47	봉당리	77-1	전	1,160	1,160		광양시	
48	봉당리	78	전	2,013	2,013		광양시	
49	봉당리	79-1	전	719	719		광양시	
50	봉당리	79	전	660	660		광양시	
51	봉당리	80-1	전	661	661		광양시	
52	봉당리	80-2	전	261	261		광양시	
53	봉당리	80-4	전	546	546		광양시	
54	봉당리	81-1	유	1,020	1,020		광양시	
55	봉당리	81-3	유	80	80		광양시	
56	봉당리	82-1	전	960	960		광양시	
57	봉당리	82-2	유	317	317		광양시	
58	봉당리	82-3	전	260	260		광양시	
59	봉당리	83-1	전	186	186		광양시	
60	봉당리	85-1	전	1,171	1,171		광양시	
61	봉당리	85-3	전	121	121		광양시	
62	봉당리	86-2	도	131	131		전라남도	
63	봉당리	86	전	99	99		광양시	
64	봉당리	87-2	도	56	56		광양시	
65	봉당리	87-3	유	13	13		광양시	
66	봉당리	88-2	도	139	139		광양시	
67	봉당리	88-4	유	1,563	1,563		광양시	
68	봉당리	88-5	유	4,757	4,757		광양시	
69	봉당리	88-7	유	51	51		광양시	
70	봉당리	88-8	유	6	6		광양시	
71	봉당리	90-3	유	44	44		광양시	
72	봉당리	95유	유	1,931	1,931		광양시	

번호	토지의 소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읍면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73	봉당리	978-6	천	135,471	499		국(건설부)	
74	봉당리	979-1	구	321	321		국(건설부)	
75	봉당리	979-4	구	78	78		국(건설부)	
76	봉당리	980-1	도	9	9		국(건설부)	
77	봉당리	981	도	1,296	1,296		국(건설부)	
78	봉당리	982-1	도	131	131		국(건설부)	
79	봉당리	산3-11	임	108	108		광양시	
80	봉당리	산3-5	임	9	9		광양시	
81	봉당리	산3-6	임	79	79		광양시	
82	봉당리	산3-7	도	96	96		전라남도	
83	봉당리	산4-10	임	74	74		광양시	
84	봉당리	산4-11	임	169	169		광양시	
85	봉당리	산4-14	임	49	49		광양시	
86	봉당리	산4-6	임	149	149		광양시	
87	봉당리	산6-15	임	838	838		광양시	
88	봉당리	산6-16	임	260	260		광양시	
89	봉당리	산6-3	임	451	451		광양시	
90	봉당리	산6-4	임	137	137		광양시	
91	봉당리	산6-5		198	198		광양시	
92	봉당리	산6-9	임	250	250		광양시	
93	봉당리	산7-4	임	12	12		광양시	
94	봉당리	산8-2	도	43	43		광양시	
95	봉당리	산8	임	85	85		전라남도	
96	봉당리	산9-2	임	99	99		광양시	
97	지곡리	887	도	1,548	109		광양시	

■ 백운제둘레길 토지편입 조서

번호	토지의 소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읍면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합 계		46필지		269,345	6,165			
1	봉당리	15	유	3,326	21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	봉당리	16	유	3,672	1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봉당리	248-3	유	45,306	302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수리조합	
4	봉당리	255	유	31,232	17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	봉당리	289-1	천	116	51		이돈*	
6	봉당리	290-2	유	1,074	9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	봉당리	296	유	6,827	15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	봉당리	336-1	유	3,718	5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	봉당리	336-3	임	321	75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수리조합	
10	봉당리	342-1	도	126	6		박*모	
11	봉당리	342-2	천	198	5		박*모	
12	봉당리	343	유	592	116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토지개량조합	
13	봉당리	349-4	답	395	198		광양시	
14	봉당리	352	유	208	158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수리조합	
15	봉당리	353	답	106	18		광양시	
16	봉당리	359-2	천	90	42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수리조합	
17	봉당리	359-3	답	66	3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	봉당리	360	유	545	100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수리조합	
19	봉당리	362-1	유	9	9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토지개량조합	
20	봉당리	362	유	236	64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토지개량조합	
21	봉당리	363	유	2	2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토지개량조합	
22	봉당리	380	유	306	14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토지개량조합	
23	봉당리	381	유	708	384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토지개량조합	
24	봉당리	423-3	구	1,153	18		국(국토해양부)	

번호	토지의 소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읍면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25	봉당리	460-2	도	63	4		광양시	
26	봉당리	460-3	도	371	26		광양군	
27	봉당리	762-1	천	251	25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8	봉당리	762-4	답	1,108	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9	봉당리	978-6	천	135,471	899		국(건설부)	
30	봉당리	983	구	3,377	15		국(건설부)	
31	봉당리	985-6	도	4,240	455		국(건설부)	
32	봉당리	990-2	구	107	19		국	
33	봉당리	995	도	638	7		국(건설부)	
34	봉당리	997	도	1,570	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5	봉당리	1001	도	1,732	89		국(건설부)	
36	봉당리	1008	도	3,688	5		국(건설부)	
37	봉당리	1040-8	답	620	367		광양시	
38	봉당리	1041-10	답	2,101	1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9	봉당리	1041-11	답	1,869	24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0	봉당리	1041-13	답	66	22		광양시	
41	봉당리	1043-12	답	2,729	420	광양읍 칠성리 495-1	광양토지개량조합	
42	봉당리	1045-3	답	148	86		광양시	
43	봉당리	1048-1	도	3,795	65		국(농림수산부)	
44	봉당리	1049-2	구	3,387	44		국(농림수산부)	
45	봉당리	1049-3	구	574	13		국(농림수산부)	
46	봉당리	1049-4	구	1,108	36		국(농림수산부)	

광양시 고시 제2017-105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 일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광양시립영세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7. 6. 1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조성사업

○ 명 칭 : 광양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확충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총 계	화 장 장	봉 안 당	휴 게 실
건축면적(㎡)	2,695.58	1,443.05	942.80	309.73
연 면 적(㎡)	6,105.19	2,908.24	2,887.22	309.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양시장(사회복지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다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및 사회복지과 비치)

8. 인가조건 : 게재 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4), 광양시청 사회복지과(061-797-3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주 소	소유자
			지 적	편 입		
합계	총 3필지		413,196	13,339		
1	산6-1	임	121,632	4,994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
2	산1-2	임	290,572	8,290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
3	362-1	전	992	55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

강진군 공고 제2017-311호

2025년 강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재공람 공고

2025년 강진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강진군 군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17. 6. 1

강진군수

1. 계획의 개요(변경)

가. 계획명칭 : 2025년 강진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공간적범위 : 강진군 행정구역 전역

라. 내용적범위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3. 공람장소 : 강진군청 지역개발과

4.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지역개발과(☎ 061-430-3364)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강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63,223,000 (55,952,981)	-	563,223,000 (55,952,981)	100.0	-
도시지역		27,041,759 (1,700,118)	-	27,041,759 (1,700,118)	4.8	-
주거 지역	소 계	3,876,552	증) 396,006	4,272,558	0.8	-
	제1종전용주거지역	5,800	-	5,8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801,768	증) 396,025	3,197,793	0.6	-
	제2종일반주거지역	990,864	감) 19	990,845	0.2	-
	준주거지역	78,120	-	78,120	-	-
상업 지역	소 계	604,812	감) 42	604,770	0.1	-
	일반상업지역	604,812	감) 42	604,770	0.1	-
공업 지역	소 계	1,418,230	감) 3,150	1,415,080	0.3	-
	일반공업지역	1,196,998	-	1,196,998	0.3	-
	준공업지역	221,232 (60,350)	감) 3,150	218,082 (60,350)	-	-
녹지 지역	소 계	19,856,327	감) 392,814	19,463,513	3.4	-
	보전녹지지역	156,000	-	156,000	-	-
	생산녹지지역	6,181,458	감) 339,735	5,841,723	1.0	-
	자연녹지지역	13,518,869 (353,930)	감) 53,079	13,465,790 (353,930)	2.4	-
도시지역 미세분		1,285,838 (1,285,838)	-	1,285,838 (1,285,838)	0.2	-
비도시지역		536,181,241	-	536,181,241	95.2	-
관리 지역	소 계	114,154,822	증) 20,589	114,175,411	20.3	-
	보전관리지역	47,688,554	-	47,688,554	8.5	-
	생산관리지역	18,401,958	-	18,401,958	3.3	-
	계획관리지역	48,064,310	증) 20,589	48,084,899	8.6	-
농림지역		312,947,671	감) 20,589	312,927,082	55.5	-
자연환경보전지역		109,078,748 (61,253,412)	-	109,078,748 (61,253,412)	19.4	-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강진읍 남성리 12-4 일원	생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39,735	200	▶향후 강진역사 입지와 시가지 확장성 등을 고려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마량면 마량리 1473-51전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1,273	200	▶신마항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지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3	마량면 마량리 38-29전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070	200	▶신마항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지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4	마량면 마량리 산112-1임 일원	자연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172	400	▶중로2-21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 의거하여 도로선형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5	마량면 마량리 산106-1임 일원	준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2,260	100	▶중로2-21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 의거하여 도로선형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6	마량면 마량리 60전 일원	준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2,062	100	▶중로2-21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 의거하여 도로선형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7	병영면 성동리 214대 일원	일반 상업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1	200	▶소로3-52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 의거하여 도로선형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8	도암면 만덕리 산108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20,589	100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유치에 따른 공공 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9	병영면 지로리 360답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886	200	▶소로3-8호선 신설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 의거하여 도로선형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10	마량면 마량리 936전 일원	일반 상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97	200	▶소로2-192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 의거하여 도로선형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11	마량면 마량리 982-1전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316	1,300	▶중로2-21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에 의거하여 도로선형을 용도지역 선형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미관지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한골목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병영면 박동리 177-1일원	101,000	감) 16,604	84,396	1,100	70~150	전고258호 ' 03.12.3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한골목 미관지구	○미관지구 면적 변경 ☞ 101,000㎡ → 84,396㎡	▶ 병영면 주거지역 내 중로3-21호선 폐지에 따른 교통체계 변경과 하멜촌 유원지의 원활한 유자관리를 위해 역사문 화미관지구 변경	

2) 고도지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1호 최고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강진읍 남성리 204 일원	1층(6m)	33,200	감) 1,484	31,716	전고130호 ' 00.07.05	
변경	2	2호 최고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강진읍 남성리 185-1 일원	3층(10.5m)	11,300	감) 2,328	8,972	전고130호 ' 00.07.0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1호 최고고도지구	○면적 변경 ☞ 33,200㎡ → 31,716㎡	▶ 동일용도(강진군청)에 일부 적용되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규제사항 해소를 위한 최고고도지구 선형 변경	
2	2호 최고고도지구	○면적 변경 ☞ 11,300㎡ → 8,972㎡	▶ 동일용도(강진군청)에 일부 적용되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규제사항 해소를 위한 최고고도지구 선형 변경	

3) 시설보호지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마량항 항만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마량면 마량리 980-65 일원	74,697	감) 3,150	71,547	전고20호 ' 93.02.15	마량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마량항 항만시설 보호지구	○면적 변경 74,697㎡ → 71,547㎡	▶중로2-21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준공업지역 조정선형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	-

4) 개발진흥지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만덕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도암면 만덕리 368 일원	-	53,400	감) 53,400	-	전고347호 ' 08.12.26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4	만덕지구	○폐지 - 감) 53,400㎡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유치에 따라 기존 다산초당지구(다산수 련원) 부지 내 공공청사 신규 입지 예정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진흥지구 폐지	

5) 취락지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2	목화	자연 취락지구	강진읍 동성리 635일원	-	35,702	전고 130호 (00.07.05)	
변경	12	옥치	자연 취락지구	강진읍 서산리 446일원	-	29,921	강고 2009-66호 (09.12.18)	
변경	246	보동	자연 취락지구	도암면 만덕리 391일원	-	34,262	강고 2009-66호 (09.12.18)	
폐지	8	평동	자연 취락지구	강진읍 평동리 153일원	-	-	강고 2009-66호 (09.12.18)	
폐지	280	해창	자연 취락지구	도암면 만덕리 6-25일원	-	-	강고 2009-66호 (09.12.18)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2	목화	○목화지구 면적 변경 ☞ 30,769㎡ → 35,702㎡	▶기 결정된 취락지구(목화마을)와 연접하고 있는 동일 소유자 및 토지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편입하여 변경	
12	옥치	○옥치지구 면적 변경 ☞ 37,454㎡ → 29,921㎡	▶기 결정된 취락지구(옥치마을) 내 입지하고 있는 취락지구 지정 목적과 불부합한 주유소 등을 제척하여 체계적인 취락지구 유지·관리 도모	
246	보동	○보동지구 면적 변경 ☞ 41,504㎡ → 34,262㎡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유치에 따른 공공청사 신규 건립을 위한 진입로 및 청사부지 저촉구간 제척	
8	평동	○폐지	▶향후 강진역사 입지와 시가지의 확장성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남성리 일원 용도지역 상향으로 취락지구 지정 목적과 불부합하여 폐지	
280	해창	○폐지	▶다수의 창고 및 근생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호수 및 지정사유 등 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불부합하여 폐지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836	4호광장	소로1-32	일반도로	-	전고제1988-142호 (' 88.8.31)	
변경	중로	1	4	20	집산 도로	836	4호광장	소로1-32	일반도로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대로1-2	중로1-4	○폭원 : 35m → 20m	▶전라남도 청사 입지계획 변경(취소) 및 지역간 연계기능 미흡(보은산 단절) 등 여건을 고려하여, 폭원 축소를 통한 사업의 현실성 제고	

2) 항만시설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신마항	2종 항만시설	마량면 마량리 38-6일원	-	증) 27,800	27,800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신마항	○신설 : 증) 20,877㎡	▶신마항 조성 완료에 따른 군계획시설 반영	

2-1)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27,800	100.0	
기본시설	소계	9,818	35.3	
	방파제	318	1.1	
	선착장	561	2.0	
	정박지	3,692	13.3	
	도로	3,905	14.1	
	보행자도로	1,342	4.8	
가능시설	소계	5,320	19.1	
	아적장	5,320	19.1	
지원시설	소계	3,946	14.2	
	업무용시설	1,681	6.0	
	주차장	2,265	8.2	
기타시설	소계	8,716	31.4	
	항만시설용 부지	8,716	31.4	

나. 공간시설

1) 광장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동성 사거리	교통광장	강진읍 동성리 45-2 일원	8,562	감) 381	8,181	전고1988-142호 (1988.08.3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4	동성 사거리	○변경 : 감) 381㎡	▶대로1-2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접속구간 변경	

2) 공원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보은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진읍 남성리 산5 일원	1,608,820	감) 1,938	1,606,882	전고1977-110호 (1977.05.2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보은산 근린공원	○변경 : 감) 1,938㎡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2-9에 의거하여 공원 경계부 조정	

3) 녹지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성전 완충 녹지	완충 녹지	대로1-6호선변 (성전면 성전리 708-6일원)	2,143	감) 1,665	478	-	
폐지	5	녹지	완충 녹지	중로1-33호선변 (마량면 수인리 347-2일원)	1,287	감) 1,287	-	전고1993-20호 (1993.02.1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7	성전 완충녹지	○변경 : 감) 1,665㎡	▶ 국도2호선 변으로 설치된 방음벽이 녹지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어 완충녹지 축소	
5	완충녹지	○폐지 : 감) 1,287㎡	▶ 양호한 수림대, 단차구간 등 녹지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어 완충녹지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공공청사	도암면 만덕리 368 일원	-	증) 81,410	81,410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5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신설 : 증) 81,410㎡	▶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신설	

무안군 고시 제2017-57호

무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

무안군수

1. 사업시행지 위치 :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해시앙아파트 진출입로 계획도로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2	26	8	국지도로	90	소로1-25	소로2-5	일반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수양건설 박석인
 - 주 소 :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133-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17.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인가조건 : 제출된 조치계획에 따라 협의사항 이행할 것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성명	주소
1	무안읍 성남리	811-1	답	7,214	222	(유) 수양건설	무안읍 수양길 133-12	-	-	-
2	무안읍 성남리	844	구	3,185	62	국토 교통부	-	-	-	-
3	무안읍 성남리	845	도	635	371	국토 교통부	-	-	-	-
4	무안읍 성남리	846	구	352	87	국토 교통부	-	-	-	-
계				11,386	742					

영광군 고시 제2017-59호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 지정 고시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1

영광군수

1.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조서

가.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산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 명칭 : 영광 열병합발전소 신설

다. 사업의 면적 : 11,50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57-8

○ 성명 : 영광열병합발전(주) 대표 김 현 남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바. 자금조달계획 : 4,807백만원(사업시행자 자체자금)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설도시과(☎061-350-4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공고 제2017-331호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주민 열람 공고

‘영광 열병합발전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합니다.

2017. 6. 1

영광군수

1.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요지

가.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산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 명칭 : 영광 열병합발전단지 조성공사

다. 사업(부지) 면적 : 11,500㎡

라. 사업의 목적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신설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57-8

○ 성명 : 영광 열병합발전(주) 대표 김현남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3.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 개재생략(영광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

4. 열람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6. 1. ~ 2017. 6. 15.(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영광군청 건설도시과(☎061-350-4963)

다.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 신청내용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용도지역	비고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산1번지	11,500	2002. 6. 4.	일반공업지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합 계				15,769	11,500						
1	홍농읍 성산리	산1	임	15,769	11,500	영광열병합 발전(주)	홍농읍 홍농로 457-8				

완도군 공고 제2017-278호

2025년 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완도군 전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 따라 완도군관리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완도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

완도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계 획 명 : 2025년 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수립
 - 계획범위 : 완도군 전역(396.36km²)
 - 목표연도 : 2025년
 - 계획내용 : 군 장기발전구상 및 미래상,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개편 구상, 핵심이슈별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변경 등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2017년 6월 1일 ~ 2017년 6월 15일(14일간)
5.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일까지(의견제출서식 : 완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완도군 지역개발과, 해당 읍·면사무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지역개발과(☎061-550-5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주민 의견서

의견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의견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완 도 군 수 귀하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7-53호

공인 등록 공고

전남개발공사 총무규정 제27조 2항에 의거 전남개발공사 광양보상 사무소(중군 ~ 진상 국지도 보상 업무)에서 사용할 공인을 다음과 같이 개인 공고합니다.

2017. 6. 1

전남개발공사사장

공 인 명	인 영	조치내용	비고
전남개발공사사장의인 광양보상용		개인	